



2015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5
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제6대 김준기 예산정책처장 임명 및 취임식



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민)는 정의화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예산정책처장(김준기) 임명동의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4일, 김준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제6대 국회예산정책처장(차관급)으로 임명하였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취임사에서 내부 역량강화 및 기관의 외부 대응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도 시무식



1월 2일, 국회 본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시무식 행사를 거행하였다.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4월 19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은 제55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아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및 국회 직원들과 함께 서울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였다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운영개선방안 업무보고



4월 7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운영개선방안을 보고하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의 제안과 같이 결산을 조기에 의결할 필요가 있음을 상임위원장에게 당부하였다.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 학술대회



김준기 처장 개회사

정의화 국회의장 격려사

김광림 국회정보위원장 축사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김광목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발제에 이어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제67주년 제헌절



7월 17일,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장단,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축식을 진행했다.

2015년 제1차 예산정책자문회의



5월 27일, 예산정책자문회의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으로 사랑재에서 상견례 시간을 가졌다. 자리를 옮겨 제6기 예산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며, 2015년도 제1차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박재완 교수(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원장)를 자문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



김준기 처장 개회사

정희화 국회의장 격려사

김재경 예결위원장 축사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용덕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2016년도 예산안 개요”를 주제로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2016년도 예산안 분석”을 주제로 김광욱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노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백웅기 상명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통일정책 토론회



김준기 처장 개회사

정희화 국회의장 격려사

10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통일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병연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조세정책 토론회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제7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참석



4월 15일~1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7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에 김준기 처장 등 4인이 참석하였다.



대외협력



2월 25일, 시디 모우하메드 퍼헤인(Sidi Mohamed FERHNE) 알제리 재무부 거시경제관측국 총국장 등 대표단이 국회예산정책처를방문하였다.



6월 3일, 체코 안 바르토섹(Jan BARTOSEK) 하원 부의장 등 13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세미나실에서 ‘국가 예산의 편성·집행 및 예산규율에 대한 논의’ 등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전반에 대하여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NABO 방문



9월 21일,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리우 쉰원(刘修文) 부주임 등 6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세미나실로 자리를 옮겨 예·결산 심사제도, 사업평가기법에 관하여 양국 간 비교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태국의회 부의장 NABO 방문



10월 8일, 태국의회 수라차이 리양분렛차이(Surachai Liengboonlertchai) 부의장을 비롯하여 14인의 대표단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2주년 기념식



10월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초청으로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등 국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2주년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제5대 국경복 처장 이임식



2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 직원 참석한 가운데 제5대 국경복 처장 이임식을 가졌다.

2015년도 국정감사 수감



10월 22일,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원유철)에서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 소속기관에 대한 2015년도 국정감사가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도 하계 인턴 실시



국회예산정책처는 7월 6일~31일까지 대학(원)생 17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하계 인턴 과정」을 실시하였다.

교육 및 특강



1월 27일,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전 기획재정부 장관)를 초빙하여 “한국경제와 재정 개혁”이라는 주제로 핵심역량 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2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로렌스 모어(Lawrence B. Mohr) 미시간대학교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준실험과 영향분석이론 (Quasi-experiments and the Theory of Impact Analysis)”이라는 주제로 2015년도 해외재정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다.

역대 처장과 간담회



5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초대 최광 처장, 제2대 배철호 처장, 제3대 신해룡 처장, 제4대 주영진 처장, 제5대 국경복 처장 등 역대 처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NABO 직원 Workshop



5월 1일, 국회예산정책처 세미나실에서 “2015년 수정 경제 전망”과 “공무원연급 개정내용과 향후 논의사항”에 대하여 직원 Workshop을 실시하였다.



5월 18일,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를 초빙하여, “트렌드 코리아 2015”라는 주제로 2015년도 제3차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12월 23일, 이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을 주제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제67주년 국회체육대회



5월 27일, 국회개원 제67주년을 맞이하여 국회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였다. 배구를 비롯하여 계주, 닭싸움 등 다양한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국회예산정책처가 포함된 비전팀(주황색)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였다.

2015년 직원 연찬회



3월 23~24일, 경기도 양평에서 2015년 상반기 직원 연찬회를 실시하였다. 배철현 서울대학교 교수를 초빙하여 “위대함의 DNA : 목상과 연민” 주제로 핵심역량강화 특강에 이어, 직원 한마음 단합대회, 두물머리 트랭킹 순으로 실시하였다.

차 례

I. 연구·분석 업무 / 1

| | |
|--|----|
| 1. 정기 분석보고서 | 3 |
| ✕ 2015 대한민국 재정 | 3 |
| ✕ 2015 경제·재정수첩 | 4 |
| ✕ Public Finance 2015 | 4 |
| ✕ 결산분석시리즈 1 | 5 |
|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 5 |
| ✕ 결산분석시리즈 2 | 6 |
| ✕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 6 |
| ✕ 결산분석시리즈 3 | 7 |
| ✕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 7 |
| ✕ 결산분석시리즈 4 | 8 |
| ✕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8 |
| ✕ 결산분석시리즈 5 | 8 |
| ✕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 8 |
|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9 |
| ✕ 예산안분석시리즈 I | 10 |
|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 10 |
|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 11 |
| ✕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 11 |
| ✕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 12 |
| ✕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12 |
| ✕ 예산안분석시리즈 IV | 13 |
| ✕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13 |
| ✕ 2015년 수정 경제전망 | 14 |

| | |
|---------------------------------------|-----------|
| ✕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15 |
|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 16 |
| ✕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 16 |
|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 17 |
| ✕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 17 |
|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 18 |
| ✕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18 |
|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V | 20 |
| ✕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20 |
|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 21 |
| ✕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21 |
|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 22 |
| ✕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 22 |
|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3호) | 23 |
|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4호) | 25 |
|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5호) | 26 |
| ✕ 2014회계연도 결산 특집호 | 26 |
|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6호) | 28 |
|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7호) | 30 |
| ✕ 2016년도 예산안 특집호 | 30 |
| ✕ NABO 경제동향 & 이슈(제38호) | 31 |
|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사회·행정 | 33 |
|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경제·산업 | 35 |
|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총괄·다부처 | 37 |
| ✕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38 |
| ✕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 40 |
| ✕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41 |
| 2. 현안분석·예산정책 보고서 | 43 |
| ✕ 경제현안분석 제87호 | 43 |
| ✕ 경제현안분석보고서 제88호 | 44 |

| | |
|--|----|
| ✕ 경제현안분석 제89호 | 46 |
| ✕ 사업평가 15-01 | 47 |
| ✕ 사업평가 15-02 | 48 |
| ✕ 사업평가 15-03 | 49 |
| ✕ 사업평가 15-04 | 50 |
| ✕ 사업평가 15-05 | 51 |
| ✕ 사업평가 15-06 | 52 |
| ✕ 사업평가 15-07 | 53 |
| ✕ 사업평가 15-08 | 54 |
| ✕ 사업평가 15-09 | 55 |
| ✕ 사업평가 15-10 | 56 |
| ✕ 사업평가 15-11 | 57 |
| ✕ 사업평가 15-12 | 58 |
|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6호 | 59 |
|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7호 | 60 |
| 3. 특별·연구·기획보고서 | 62 |
| ✕ 조세의 이해와 쟁점—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지출, 통계편 | 62 |
| ✕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 63 |

II.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분석 업무 / 67

| | |
|----------------------------|----|
|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 69 |
| 가. 2015년 처리 현황 | 69 |
| 나. 최근 5년간 추이 | 69 |
|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 70 |
| 2. 법안비용추계 현황 | 72 |
|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 72 |
|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 | 72 |

| | |
|------------------------------|----|
|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 74 |
| 라. 관련 보고서 발간 | 75 |
| 3.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 76 |
| 가.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 76 |

III. 주요 사업 및 활동 / 79

| | |
|---|-----|
|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 81 |
| 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학술대회 | 81 |
| 나.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 | 83 |
| 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 88 |
| 2. 정책 토론회 개최 | 90 |
| 가. 조세정책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 90 |
| 나. 통일정책 토론회: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 | 93 |
| 다.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 | 96 |
| 3.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개최 현황 | 99 |
|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 99 |
| 나. 포럼 현황 | 103 |
| 4. 정보화 사업 | 105 |
| 5. 대외협력 | 109 |
| 가. 국제교류 | 109 |
| 나. 제7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 | 111 |
|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 113 |
| 7.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 | 116 |
| 8. 교육훈련 | 118 |
| 9. 직원연구모임 | 121 |

| | |
|--------------------------------|-----|
| 10. 연구용역 | 122 |
| 11. 사회봉사활동 | 125 |
| 12. 2015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 126 |

IV. 부 록 / 127

| | |
|-------------------------------|-----|
| 1. 조직 및 예산 | 129 |
| 2. 연 혁 | 131 |
|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 132 |
| 4. 언론보도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통계 | 145 |
| 5. 발간물 총 목록 | 146 |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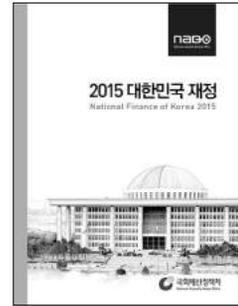
I

연구 · 분석 업무

1. 정기 분석보고서

2015 대한민국 재정

- 발간일 : 2015년 2월 23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03-4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매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하여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뒷받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 예산에 대한 해설서인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여 복잡한 국가재정 제도 및 현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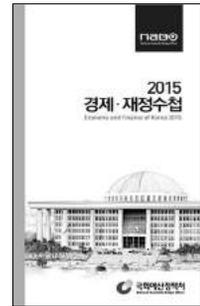
본 책은 제1부에서 우리나라 재정체계 및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하고, 제2부에서 2015년도 재정총량 및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사내역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16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53개 중앙관서

의 2015년도 확정 예산을 분석·정리하고, 주요 재정·경제통계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특히, 「2015 대한민국 재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2015년도 3월부터 확대 시행된 법안비용추계 등 신규 재정제도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신설·폐지된 부처간 예산 이체 등 재정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을 회계·기금별로 파악하기 쉽도록 정리하였다.

2015 경제·재정수첩

- 발간일 : 2015년 4월 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05-8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입법 및 예·결산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15 경제·재정수첩」을 발간하였다. 정확한 통계는 복잡한 경제·사회 현상의 이해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서, 「2015 경제·재정수첩」은 신뢰할 수 있는 경제·재정통계를 법안 및 예·결산 심사과정에서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5 경제·재정수첩」은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경제통계」에는 GDP,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 통계를, 제2부 「재정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과 관련된 통계를 수록하였으며, 제3부 「위원회별 통계」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처의 재정 규모와 주요 제도·사업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Public Finance 2015

- 발간일 : 2015년 4월 7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07-2 93350



동 보고서는 「2015 대한민국 재정」의 주요 내용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2015년 재정총량, 분야별 재원배분, 의무지출 등 재정의 주요 내용과 국회 심의내역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재정현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재정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 CBO, 캐나다 PBO 등 주요국 예산기구, 주요국 재외공관, 주한대사관 등에 배포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1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 발간일 : 2015년 6월 18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17-1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을 발간하였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결산 심사가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부처별 분석 보고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둘째,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상임위원회별로 분권하여 발간하였다.

셋째, 기존의 분야별 분석은 그 핵심 내용을 추려 부처별 분석에 통합하였다.

넷째,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산 분석을 강화하여, 예산과 결산심사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동 보고서는 15개 위원회 소관의 51개 부처,

405개 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는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국채발행으로 차입한 자금을 받고 그 이자를 기금으로 상환하고 있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세수 부족에 따라 3분기 및 4분기 이자 지급을 유예하였는데, 이는 유례가 없는 일로 장래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산업통상자원부는 R&D 사업에서 발생하는 기술료 수입을 2014년에 세입 처리하였는데, 국가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소기업청은 성장성이 높거나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잠재적 부실기업에 대한 융차지원이 반복되고 있다.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 발간일 : 2015년 6월 24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27-0 93350



2013회계연도 결산 의결 시 국회가 시정요구한 1,541건 중 직전 2년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대해 시정요구하였으나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여 반복 시정요구한 건수는 201건 (13.0%)에 달하였다.

반복 시정요구한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166건 (2011회계연도) → 190건(2012회계연도) → 201건 (2013회계연도)으로 증가하였다.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건수는 272건(17.7%)으로 나타났다.

결산을 의결한 다음해 4월 말 기준 조치미완

료 건수는 최근 3년 동안 168건 (2011회계연도) → 255건 (2012회계연도) → 272건 (2013회계연도)으로 증가하였고, 시정요구 건수 대비 조치미완료 건수 비중(17.7%)은 2012회계연도(21%)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2010회계연도(7.9%) 및 2011회계연도(13.6%)에 비해서는 높았다.

국회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 조치 결과에 대한 국회 재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 하여야 한다.

결산분석시리즈 3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 발간일 : 2015년 7월 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35-5 93350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은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 운용 전반에 관한 점검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 시 국가재정의 운용 결과와 문제점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을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2014년 재정운용 결과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014회계연도 총수입은 356.4조원으로 예산 대비 12.9조원이 감소하였으며, 3년 연속 예산대비 결손이 발생하였다. 총지출은 예산 대비 7.9조원 감소한 347.9조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5조원(GDP 대비 0.6%) 흑자이나,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는 29.5조원(GDP 대비 Δ 2.0%)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하여 적정 수준의 세입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규 사업, 수시배정 사업,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이용·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있다.

끝으로 64개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분석하여 적정 여유자금을 보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소형기금의 자산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연기금투자물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기금운용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4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 발간일 : 2015년 7월 6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36-2 93350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다. 동 보고서는 정부 결산서 부속서류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결산서(42개 중앙관서, 339개 사업, 22조 6,097억원)에 대해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여부, 양성평등 제고 효과,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체계 검토와 함께 정부 결산 심의 시 성인지적 시정

요구사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개별 사업 단위로 검토하였다.

성과목표에 미달한 13개 사업과, 양성평등 제고 노력이 미흡한 8개 사업,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3개 사업을 분석하였다.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성과목표 달성 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양성평등 제고효과를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의 거시적 접근 필요,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을 위한 대상사업의 단계적 확대 필요를 제안하고 있다.

결산분석시리즈 5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5년 8월 10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38-6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시리즈를 종합

적으로 요약·정리한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거시·총량 분석 등에서는 「2014회

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 「2014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 평가, 신규 재정사업 분석, 수시배정사업 분석, 예산의 이용·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분석,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분석,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분석, 기금 여유자금 분석 등 2014년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와 재정운용상의 문제점의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부 부처별 분석에서는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총 15개 위원회 소관의 51개 부처, 405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2014년도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주요 사업들에 대한 결산 분석을 강화하여 예산과 결산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고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기존 결산 분야별 분석의 핵심 내용을 추려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통합하였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발간일 : 2015년 7월 10일
- 발간부서 : 국회예산정책처
- ISBN : 978-89-6073-837-9 9335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은 7월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약 22조 원 수준의 재정보강책이 2015년 3/4분기에 10.0% 집행된다고 가정할 때 경제적 총효과는 20

15년 0.26%p, 2016년 0.32%p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재정보강책의 경기부양효과가 연내에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재정보강책의 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2015년 37.5%(579.5조원)에서 2018년 39.8%(720.4조원)로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부합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6조원의 세입경정의 경우, 세입을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그 조정분에 대해서 국채발행을 통해 보전해 줌으로써 하반기 재정지출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국세수입 결손액은 정부예상치보다 0.3조원 적은 5.3조원으로 전망되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전망치 역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 세입전망의 객관성을 확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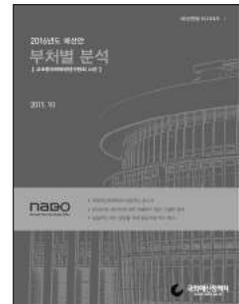
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적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출사업에 있어서는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14개 부처, 36개 사업에 대하여 총 45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유형별로는 ①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②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흡 16건, ③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④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 등이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 발간일 : 2015년 10월 19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57-7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을 발간하였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각 부처별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처별 분석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이자 국회예산정책처를 대표하는 보고서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심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담아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본 보고서는 15개 위원회 소관의 48개 부처 546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선례를 참고하여 실질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 일부 사업은 절감가능액수를 명시하였다.

둘째,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부대의견이 채택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책개선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셋째,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업들은 그 이유 및 금액을 보고서에 제시하였다.

넷째, 예산분석실 내에서 4차례 심의회를 거치고, 전직 차관급 공무원·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위원 감수를 거치는 등 보고서의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절차를 강화하였다.

다섯째, 보고서 발간 전 정부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고, 최종 보고서에 부처의 입장도 적절히 소개하였다.

여섯째,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 발간일 : 2015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69-0 93350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총량 및 재정운용 전반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국회의 거시·총량적인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고서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량분석 부분에는 최근 재정여건과 경제상황을 정리하고, 총수입·총지출 증가율 변화 등 2016년도 예산안에 나타난 총량적인 특징과 복지·SOC·교육 등 주요 분야의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분석을 수록하였다.

중점분석 부분에서는 신규 재정사업, 유사·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결산 시정 요구사항과 예산의 연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첫째, 신규 재정사업에서는 2016년도 신규사업 150개 중 부처별 분석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을 법적근거 미흡,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의 과다편성 등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2016년도 예산안에서 유사·중복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사례는 33건이다. 이 중 부처 내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16건이며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은 17건으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2014년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2011~2014년 4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130개를 분석하였다.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넷째, 2014회계연도 결산에서 예산 과다편성·집행부진·유사중복을 이유로 시정요구 받은 사업의 예산안 반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수

록하였다.

다섯째, 2016년도 예산안에서 예산 비목구분 위반·연차별 소요예산 배분기준 초과·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을 위반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 발간일 : 2015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68-3 93350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은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43개 중앙관서, 332개 사업, 27조 7,602억 원 규모)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이다.

동 보고서는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념, 성인지 예산서 현황,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과의 연계 분석,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도 예산서’ 현황에서는 17개 주요 부처에 대한 성별수혜, 성인지 성과목표·지표, 대상 사업 선정의 적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성별 수혜 분석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며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성과목표·지표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과 성인지 사업대상 선정에

있어 합리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과의 연계 분석에서는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상 지적되었던 24개 사업 중 12개 사업은 성과목표 조정·변경되었으며, 4개 사업은 성별수혜자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조정 등으로 양성평등제고 노력이 반영되었고, 2개 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에 포함 되는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분석에서는 교육 참석 여부 확인 및 2016년도 성인지 예산안 작성에 관한 설문을 통하여 각 부처의 성인지 사업담당자들에게 성인지 예산 개념 및 성인지 사업 분석 방법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 및 충실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발간일 : 2015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예산분석실
- ISBN : 978-89-6073-871-3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도 예산안분석 시리즈를 종합적으로 요약·정리한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발간하였다.

제1부 거시·총량 분석 등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2016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 다뤘던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거시·총량 분석에서는 2016년도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정책 과제 분석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그 외에도 신규사업, 유사·중복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사업,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의 연계,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의 핵심 내용을 수록하였다.

제2부 부처별 분석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의 내용을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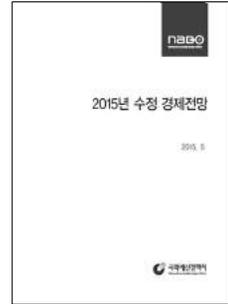
총 15개 위원회 소관의 48개 부처, 546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위해 절감가능액을 일부 명시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증액사유가 있는 사업들도 보고서에 적시하였다.

또한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예산안 반영여부를 분석하여 결산과 예산안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분석은 전문성·투명성·중립성 강화를 위해 내부 심의회, 외부 자문위원의 심의를 거쳤으며, 보고서에 정 부부처의 입장도 함께 소개하였다.

2015년 수정 경제전망

- 발간일 : 2015년 5월 1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ISBN : 978-89-6073-808-9 93350



2015년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여 2014년(3.3%)에 비해 0.3%p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국내경제가 강한 성장모멘텀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 세계경제도 당초 예상보다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특히 신흥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신흥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큰 국내 경제 성장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원/달러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원화의 통화가치를 나타내는 실효환율지수가 상승세에 있어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유가하락과 복지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에도 민간소비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경제성장세가 기대보다 미흡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기는 아직 상승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15년 하반기 국내 경기는 상승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5년 3월 경기선행지수가 전년동기대비 9.7%상승하며 국내경제 성장세

의 확대를 예고하고 있으며, 가계소비에 선행성이 있는 내구재 출하도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가계소비도 회복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철강·조선·화학 등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의 어려운 업황에도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8년 중국내경제는 연평균 3.3% 성장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2015년 전년대비 3.0%, 2016년 3.3%에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는 잠재성장률 근방인 3.5%로 회복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첫째, 2016년부터 세계경제가 완만하지만 성장세가 확대되는 것이 국내경제를 견인할 전망이다. 둘째, 저유가 및 저금리가 국내수요를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즉, 저유가로 소비가 증대되고 낮은 금리가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한편 설비투자의 회복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 발간일 : 2015년 6월 1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 ISBN : 978-89-6073-813-3 93350



2014년 우리 경제는 경기침체에서 다소 회복되어 전년의 2.9%보다 높아진 3.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세계경기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2014회계연도 총수입은 356.4조원을 기록, 예산(369.3조원) 대비 -12.9조원이라는 대규모 결손을 시현하였다.

국세수입은 전년대비로는 1.8% 증가하였으나 예산 216.5조원에 비해서는 10.9조원(-5.1%) 부족한 205.5조원이 징수되었다. 국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8%로 예산상 증가율(7.6%)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2013년의 낮은 증가율(-0.5%)에 비해서는 소폭 개선되었다.

국세외수입은 예산 152.8조원 대비 2.0조원(-1.3%) 부족한 150.9조원이 수납되었다. 세외수입은 예산 27.3조원 대비 2.6조원(-9.7%, 일반 및 특별회계 각각 0.6조원, 2.0조원) 적게 수납되었고, 기금수입은 계획 125.6조원 대비 0.7조원(0.5%) 초과수납되었다. 전년과 비교시 국세외수입은 0.9조원(0.6%)으로 소폭 증가하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모두 감소하였고 기금수입의 기타 항목도 모두 결손을 보이는 등 부진한 가운데 융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실적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3.7조원(3.0%) 증가하였다.

최근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는 국세수입이 낮은 증가세를 보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장률 둔화와 저물가의 지속 추세는 향후에도 세수의 자연적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산업구조 변화와 법인간 수익성 격차 확대, 법인세 유효세율 하락 추세는 세수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금번 소득세 세계개편이 가져온 세부담 집중도 심화와 노동시장 양분화로 인한 세입기반 위축 등의 현상은 과거 우리가 의존하였던 세원 및 조세체계로는 향후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우리 경제의 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가운데 조세정책 측면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 및 적정 담세수준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각종 조세지출의 축소 등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대규모 세수결손의 지속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키므로 올해로 3년째인 세수결손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재정당국은 재정운용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제 및 세수 예측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국회 또한 세입예산 심사를 보다

강화하여 성장률 조정, 세입여건 변화 등 정부안 제출 이후의 중요 변화를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 발간일 : 2015년 9월 21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 ISBN : 978-89-6073-844-7 93350



2016년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2015년보다 0.4%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수는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보이고, 총수출은 전년도 급락에 대한 기저효과와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내수회복을 제약하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내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성장회복 모멘텀은 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가 누증되고 성장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성장둔화에 대한 우려, 신흥국 경제위기 가능성 등 불확실성 확대가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교역조건 개선에 의한 국민소득 상승효과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등으로 2.3% 증가할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저금리와 주택수요 회복에 힘입어 주거용 건

물투자는 증가하지만 정부 SOC 예산 축소 등으로 토목투자 감소가 일부 상쇄하여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자동차, IT·통신분야의 교체 수요와 신수요 증가로 건설한 투자가 지속됨에 따라 5.2% 증가할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기회복 및 교역량 확대로 5.8% 증가할 전망이며, 수입은 내수개선과 국제원자재가격 반등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년도 급락에 따른 반등효과가 강하게 작용하여 10.9% 증가할 전망이다.

2017~2019년 중 국내 실질경제성장률은 연평균 3.3% 성장하여 2015~2016년(연평균 2.8%)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근 수년간 지속되어온 내수부진이 점차적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구매력이 높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회복세로 대외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15~2019년 중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 초반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앞으로 도 추격형 성장단계의 한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추세적 하락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5년(2010~2014년)간의 잠

재성장률 하락은 장기간 지속된 투자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만성적인 투자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 발간일 : 2015년 10월 15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ISBN : 978-89-6073-850-8 93350



정부가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2015년 세법 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력 강화·민생안정·공평과세·조세제도 합리화라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책효과 및 세수효과 분석과 함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및 세입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지원의 효과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회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들의 경우 국내의 경제여건상 정책의 실효성

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청년고용증대세제’는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여건 하에서 고용 증대효과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이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중국 경제 부진 등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도입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은 적자가구 비율이 높고 납입금액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커지는 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의 정부 기준 ‘전년대비’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총 1조 892억원(NABO 추계, 6,811억원)으로 지난 3년간 세법개정안의 평균 세수효과(‘12~’14년, 2.16조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증가되는 재정소요에 따른 세입확충 방안으로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세입확충 부진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에 따른 것으로, 올해 일몰도래한 총 88개 항목 중 19개 항목이 일몰될 계획으로 항목수 기준 정비율은 21.6%에 달하나, 대규모 항목들이 일몰연장됨에 따라 정비액은 지난 3년간(12~14년) 평균 9,934억원의 1/4 수준인 2,468억원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현 경제의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걱정된 세 부담 수준 및 이를 위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5.9)’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19년 중 17~18%대의 조세부담률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복지지출 비중이 낮았던 2000년대 초반의 세 부담 수준이다. 향후 저성장세에 따른 세수기반 약화, 복지재정수요 증대 등에 대비해 특정 세목 위주의 대안보다는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II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발간일 : 2015년 10월 1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과 · 재정정책분석과
- ISBN : 978-89-6073-848-5 93350



2015년 총수입은 376.2조원으로,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의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19.9조원(5.6%) 증가할 전망이다. 자산시장의 호조 및 담뱃값 인상 등으로 인한 국세 수입 증가(5.9%)로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 경상성장률(4.3%)을 소폭 상회하는 증가세가 예상된다. 2015년 추경예산(377.7조원) 대비로는 제도변경 등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로 -1.4조원(-0.4%) 부족할 전망이다, 국립대 등록금이 2015년부터 대학회계로 직접 수납되는 제도 변화(-1.5조원)를 제외할 경우

2015년 총수입은 추경예산을 0.1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2016년 총수입은 전년 대비 14.9조원 증가한 391.2조원으로, 국세수입의 둔화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5.6% → 4.0%). 국세는 224.2조원으로, 자산시장의 회복세 둔화 및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 미미, 세법개정 세수효과 축소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5.9% → 3.0%)될 전망이다. 국세외수입은 166.9조원으로, 한은인여금 및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 확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에 따

라 전년(5.1%)에 비해 소폭 확대된 5.3% 증가할 전망이다.

2016년 NABO 총수입 전망치 391.2조원은 예산안 391.5조원에 비해 -0.3조원(-0.1%) 낮은 수준으로, 국세수입은 1.1조원 높고 국세외수입은 1.4조원 낮게 전망되었다. NABO는 2016년 국세수입을 정부(223.1조원)보다 1.1조원(0.5%) 높은 224.2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소득세의 건조한 증가세가 지속되고 금년 3분기 이후의 소비 개선세가 2016년 부가가치세수의 소폭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 데 기인한다. NABO 국세외수입 전망치는 166.9조원으로 예산안 168.3조원보다 1.4조원(0.8%) 낮으며 주로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전망차이(-1.1조원)에 기인한다.

2015~2019년 총수입 증가율은 4.4%로 경상성장률 4.6%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국세수입 탄성치의 하락 등에 기인한다. 중기 총수입 증가율은 NABO(4.4%)와 정부(4.3%)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2016년 세입예산안은 과거에 비해 보수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그간 세입전망의 낙관으로 인한 재정운용의 불확실성과 훼손된 정책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2016년 세입예산안 상 국세수입 증가율은 3.4%

(15년 추경예산대비)로 과거 예산증가율(과거 5년 평균 6.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국세수입은 2014년 이후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세입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 역시 세수증가에 기여하였다. 최근 국세수입은 자산시장 호조, 징세행정 강화 등으로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구조적 취약성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원대책 없이 최근 몇 년간 확대재정정책이 추진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다. 향후 재정정책은 확장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정상화시키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빠른 국가채무 증가추세가 중기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미약한 청사진만을 제시하는 관행을 '2015~2019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도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 및 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재정의 상황을 보다 투명하게 공표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발간일: 2015년 10월 26일
- 발간부서: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과
- ISBN: 978-89-6073-867-6 93350



본 보고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재정총량과 재정기조, 분야별 재원배분 및 국가채무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재정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2016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과거 낙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경제성장률(3.3%)과 세입전망을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총수입 증가 둔화(2.4%)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2016년 총지출 증가율(3.0%)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청년층의 고용활성화, 노동유연성 확대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확충, 한류 및 국내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등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과 문화 분야의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각각 6.2%, 7.5%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반해 SOC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예산은 재정지출구조의 재편과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율성 개선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6.0%, 2.0%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되었다.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제적 효과는 2015년(0.25%p) 보다 소폭 하락한 0.18%p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중기재정운용 기조는 2016년에 다소 확장적이나 이후 다소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는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4.4%로 전망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상성장률 전망, 국세탄성치의 차이 등으로 4.3%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보조사업 조정,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2.0%로 계획함으로써 국가채무가 2018년에 GDP 대비 41.1%를 정점으로 다소 감소하여 2019년에 4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세출구조조정이 중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낮으며 2017년 이후 재량지출이 실질가치 수준으로 동결된다는 가정 하에 국가채무가 2019년에 43.4%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중기적으로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이 경제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채무 증가가 주로 재정운용의 결과인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확대에 기인하고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커져만 가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한반도 통일과 같은 급격한 재정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제도개선 과제로 우리나라 재정여건에 적합한 재정준칙의 도입, 불요불급한 재정사업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향후 증가하는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다각적인 세입확충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발간일 : 2015년 10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ISBN : 978-89-6073-870-6 93350



정부가 지난 9월 11일에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제감면액은 2014년 34조 3,383억원에서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35조 6,656억원과 35조 3,3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는 이러한 조세지출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올해 조세지출 정비계획과 이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는 세원확대의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의 기본원칙인 세부담의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2015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조세지출 항목은 총 229개(경과규정 포함 시 263개)로, 정부는 이 중 올해 일몰도래 하는 88개 항목 가운데 ‘재형저축 비과세’ 등 19개 항목을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등 15개 항목을 신설하고, ‘R&D비용 세액공제’ 등 13개 항목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이러한 비과세·감면 항목의 폐지(2,468억원), 신설(-7,892억원), 축소조정(6,900억원)에 따라 연간 1,476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3년간(‘12~’14년)의 평균 정비

규모(1조 5,365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세입확충 역시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지출 정비에 있어 항목별 폐지나 축소 조정 노력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조세지출 총량제한 및 일몰도입 확대 등과 같은 제도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조세지출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조세지출 정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감면액은 증가추세에 있는 등 현행 제도로는 조세감면액 규모를 축소하는 데 실효성이 크지 않다. 조세지출의 총량제한을 위해서는 기존 조세지출제도의 개정 시 감면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정지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조세지출에 대한 평가가 주

로 제도의 일몰도래 시 이루어짐에 따라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에 대한 평가가 미비한 상황이다. 향후 이들 항목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한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몰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조세지출 평가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신설항목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14개 항목이 평가 예외사항(추정곤란, 경제·사회적 환경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일몰도래 항목에 대한 ‘심층평가’에서는 평가대상 중 5개 항목이 정책 필요성과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제외되었다.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평가대상 예외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VI

2015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 발간일 : 2015년 11월 2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수추계1·2과
- ISBN : 978-89-6073-873-7 93350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최초로 실시한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

도가 도입취지인 조세지출의 정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설계·운용되었는지에 대한 중점 분석을 담고 있다.

첫째, 평가대상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결과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조세특례 항목이

평가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제외사유를 적시하여 공개하는 등 평가대상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몰 규정 없이 장기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조세특례 항목에 대해서도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서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에 포함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평가방법의 적정성(타당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심층평가를 위해서는 사업목적에 파악해야하고, 사업목적에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입논리(intervention logic)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과창출 단계별로 개입논리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 정부개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의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조세지출이 의도한 정책효과를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효과성(E/C)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지속적인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수혜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우 및 외생적 요인의 결과가 조세특례제도의 효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평가 분석결과 심층평가 결론이 세법개정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와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폐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가 발견되었으므로 심층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가 세법개정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3호)

- 발간일 : 2015년 2월 28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230-000679-06



1. 유가하락의 경제적 파급효과

최근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14년 6월 2일 배럴당 105.6달러에서 2015년 1월 20일 배럴당 44.82달러까지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공급면에서 보면 비OPEC의 원유공급 확대와 OPEC 국가들의 증산에 기인하고, 수요면에서는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의 경기 부진 및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석유 수요의 증가세도 둔화되었기 때문이다. 2015년 국제유가는 현수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50달러대)을 유지하거나 하반기에 완만히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는 물가하락 및 금리하락으로 이어져

비용측면에서 우리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GVAR (Global Vector Autoregression) 모형을 이용하여 유가하락의 물가/금리 파급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실질 GDP가 증가하고 물가와 금리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액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생산비는 하락하고, 석유제품의 소비자인 가계와 정부의 구매력이 증가한다. 유가가 10% 하락하는 경우 전산업 0/67%, 제조업 1.04%, 서비스업 0.28%의 생산비용 감소가 예상된다.

유류 관련 세수는 국세의 14%(2013년 기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최근의 저유가는 유류 관련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국제유가 변동시 유류 소비의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수의 증감 방향이 달라지는데, 유가하락에 비해 유류 수입 및 소비량 증가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2. 2014년 경제성장의 특징

2014년 경제성장률은 3.3%로 2013년(3.0%)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탄력적인 회복세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4차례의 경기확장기 중 이번 경기순환기의 경기회복세

가 가장 완만하였다. 내수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하락하여 성장 내용이 건실하지 못하였다. 가계부채 부담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재고 기여도 및 설비투자 기여도가 상승하는 등 기업의 경기회복 기대는 호전되고 있다. 총수출증가율은 아시아국에 대한 수출부진과 중계무역마진의 감소로 인해 2013년 4.3%에서 2014년 2.8%로 둔화되었다.

3. 2014 회계연도 총세입 마감결과

2014 회계연도 총세입(일반회계+특별회계)은 298.7조원으로 예산 309.7조원 대비 11.0조원 부족하다. 국세수입 실적은 205.5조원으로 예산 216.5조원 대비 10.9조원 부족하고, 전년 201.9조원 대비 3.6조원 증가하였다. 세수 부진은 기업실적 악화, 경기 둔화에 따른 내수 및 주식시장 부진,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하락 등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2015년 국세수입은 2015년 거시경제 전망 하향조정, 2014년 실적 부진 등을 감안할 때 기존의 전망(2014.10.)을 하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4호)

- 발간일 : 2015년 4월 2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230-000679-06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잠재력 둔화와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가 단순히 일시적 투자나 소비부진에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성장잠재력의 중장기적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IMF와 OECD는 선진국의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잠재성장률이 위기 이전부터 이미 추세적 감소를 해온 점을 꼽았다. 아울러 현재의 세계경기 침체는 성장잠재력 자체의 장기적 하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통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는 ‘추세적 침체론(Secular Stagnation)’이 대두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공급 측면의 원인에 의해 유발될 경우 통화정책이나 총수요 확대정책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생산성의 제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촉진 등을 통한 장기적 대처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생산성 제고를 위해 R&D 투자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 및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원, 네트워크 촉진을 통한 효율화 등을 추진해야 하며,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초과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

대 등을 통해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동시에 촉진할 필요가 있다. 통일에 대비한 물적, 인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미리 계획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환율 변동성 확대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2015년 들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미달러지수의 변동성이 미달러화 약세기간(2002년 1/4분기~2004년 1/4분기)과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재정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국제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첫째, 국제적 정책공조 없이 자국 이해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중앙은행이 증가하고, 둘째, 기축통화 보유국가의 상반된 통화정책에 기인한다. 미국과 영국은 최근 금융긴축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반면 유로지역 ECB와 일본은 양적완화정책을 더욱 확대 추진한 것이 환율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국제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우리나라 원화의 통화가치 동향에 대해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과감해진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화가 국제자금흐름, 국제금융시장, 한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축통화국 간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최근 일본의 소비세 인상 동향

일본은 2000년대 중반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사회보장 관련 세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세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2012년 사회보장개혁과 더불어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종전 5%에서 단계적으로 2015년 10월까지 10% 인상하기로 입

법화하였으며, 1차적으로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8%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2014년 11월 아베내각은 실질GDP 하락과 개인소비 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2015년 10월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10% 인상은 2017년 4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소비세 인상 관련 법안에 의해 동 세수는 모두 사회보장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목적세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역진성 완화 대책의 하나로 현재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경감세율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5년 2월 「소비세경감세율제도검토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 도입을 목표로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5호)

2014회계연도 결산 특집호

- 발간일 : 2015년 6월 29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230-000679-06



1. 2014회계연도 재정운용의 특징과 문제점

➢ 2014년 경제 여건

2014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세 약화, 자원수출국 중심

의 신흥국 성장세 둔화로 3.4% 성장하였다. 세계 교역증가율은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신흥국의 수출입 증가율이 둔화되어 전년대비 3.4% 증가하였다. 2014

년 국내경제는 세계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설비투자 증가로 2013년(2.9% 성장)보다는 높은 3.3% 성장을 나타내었으나, 내수회복세가 지연되면서 저성장세가 지속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저성장세에 따른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급락 및 농산물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과 동일한 1.3% 상승하였다.

➤ 연례적 세수결손과 세입환경 변화

2014회계연도 총수입은 356.4조원으로, 국세 수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3년대비 4.6조원(1.3%) 증가에 그쳤으며, 예산(369.3조원)대비로는 12.9조원(-3.5%) 부족하였다. 2014년 국세수입은 소득세 등의 증가로 2013년의 낮은 증가율에 비해서 소폭 개선되었으나, 예산 증가율(7.2%)에는 크게 못미쳐 대규모 결손(-10.9조원)을 기록하였다. 2014년 국세수입의 전년대비 소폭 증가는 세입환경의 근본적 개선보다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감소 등 일시적 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2014년 국세수입이 예산대비 -10.9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을 기록함에 따라 2012년 이후 3년간 세수결손이 지속되었다. 세수결손의 원인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지연된 점과 함께 정부가 세입 목표치를 높게 설정하는 경향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운용

2013년 발생한 8.5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에 따른 4/4분기 재정지출 감소가 2014년 1/4분기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자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실시하였다. 조기집행은 2002년 이후 연도별 상반기 경제성장률 제고 등 경기부양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의 불일치(mismatch)가 심화되어 단기 재원조달 규모 증가와 하반기 재정여력 악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금운용계획변경(재정보강)과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한 총 46조원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시행하였다. 정책금융 지원은 기업의 단기자금사정 개선을 통해 수출이 증대되고 투자가 촉진되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정책자금 공급 기관 간 중복지원 등 정책금융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 해결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구조적 재정적자 심화

2014년 대내외적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이 확대되고, 저성장세에 따른 세수 증가세 둔화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의 증가, 이자지출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14년 국고채 발행한도 97.5조원 중 상환발행(59.9조원)을 제외한 신규발행은 37.6조원 규모로 국채발행으로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283.8조원)는 전체 채무의 53.5%으로, 2013년도에 이어 금융성 채무(246.7조원, 전체의 46.5%)를 상회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질적으로도 꾸준히 악화되고 있

다.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4년 19.4조원이며 전년도(18.8조원)에 비해 0.6조원 증가하는 등 급속한 이자지출 증가는 향후 재정위험 가능성을 대두시켜 정상적인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재무결산 평가

2015년 6월 말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총 316개 기관으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2014회계연도 자산은 778.7조원, 부채는 520.5조원, 당기순이익은 11.3조원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 대한 각 주무부처의 관리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

2014년 말 비금융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288.9조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일부기관 금융부채 감소에 따라 2013년 말에 비해 3.2조원 감소하였으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 중 대한석탄공사 등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손실 누적이 장래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재정운용 과제

정부는 경제·재정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세수결손으로 나타난 지속적인 재정운용의 차질 문제를 해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세입규모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심사관행의 개선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인한 세수부족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6호)

- 발간일 : 2015년 8월 2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1. 2015년 상반기 경제동향 특징

2015년 상반기 국내경제는 메르스로 인한 내수 위축과 대외부문의 부진으로 전분기비 1/4분기

0.8%, 2/4분기 0.3%(전년동기 대비 2.5%, 2.2%)의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경기관련 지표의 움직임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가파른 상승

과는 달리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등락을 거듭하며 두 지수 간 괴리가 확대되었다.

2. 미국 금리인상과 위안화 평가절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향후 미연준의 금리인상 방식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는 메르스 사태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체감할 만한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어, 미 금리인상이 국내 경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 가장 큰 요인은 최근 중국 경제의 부진이다. 위안화 평가절하 자체보다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으로 인한 성장률 하락이나 이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정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경제성장률과 한국의 대중 수출 간 상관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3. 최근 수출 감소의 특징과 시사점

2015년 상반기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 대비 5.1%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2분기 이상 수

출이 감소한 적이 지난 15년간 세 차례 밖에 없었다. 최근의 수출감소는 유가하락, 수출경쟁국 일본 엔화의 통화가치 하락, 중국의 수입 정책 변화 등의 원인이 있다.

4. 구글세(Google's Tax) 관련 국내외

논의와 시사점

구글세는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각종 세금 종류를 통칭하는 용어로,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조세회피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구글 등 다국적 디지털 기업의 조세회피는 국제거래에 유리한 다국적 지위를 이용해 세원잠식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부문의 세수확보 방안으로서 중요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5. 2015년 상반기(1~6월) 국세수입 실적

2015년 상반기 세수실적은 106.6조원으로 전년동기(98.4조원) 대비 8.2조원(+8.3%) 증가하였다. 상반기 세수실적 증가는 자산시장 회복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호조, 세법개정 및 징세행정 강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에 기인한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7호)

2016년도 예산안 특집호

- 발간일 : 2015년 10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1. 예산안 개요 및 특징

2016년에는 세계경제가 완만히 회복하고, 낮은 금리 및 저유가의 자극으로 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경제는 전년대비 3.0% 성장하여 올해(2.6%)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중국 경제성장세 둔화에 기인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세계경제가 부정적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국내경제의 하방위험도 상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재정을 보다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정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 재정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아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경제성장률과 세입전망을 과거 낙관적 전망에서 벗어나 낮은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다. 하지만 총수입 증가 둔화(2.4%)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2016년 총지출 증가율(3.0%)을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억제하였으나,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2. 재정수입 분석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공형하고 원칙이 있는 세제” 구현에 중점을 두고 ‘2015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세법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현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지원의 효과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과 증장기 세입확충 방안 부족 등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6년 총수입은 전년대비 14.9조원 증가한 391.2조원으로, 국세수입의 둔화로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5.6%(‘15) → 4.0%(‘16)). 국세는 224.2조원으로, 자산시장의 회복세 둔화 및 법인의 영업실적 개선 추세 미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5.9% → 3.0%)될 전망이다. 2016년 NABO 총수입 전망치 391.2조원은 예산안 391.5조원에 비해 -0.3조원(-0.1%) 낮은 수준이다.

3. 재정지출 분석

2016년 총지출은 전년(375.4조원) 대비 11.1조원 증가한 386.5조원(정부 386.7조원)으로 전

망되었다. 전망 차이는 재량지출(203.3조원)은 정부계획을 그대로 적용하여 거시경제 전망의 차이 등으로 인한 의무지출(183.2조원, 정부 183.4조원)의 차이에 기인한다. 분야별 자원배분의 특징은 첫째, 청년층 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개혁에 따른 고용시장의 일시적 불안정성을 완충하기 위한 일자리 예산 확충(15.8조원), 둘째, 문화·체육·관광 분야(6.6조원)에서 한류 및 국내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제시, 셋째, SOC 분야(24.8조원 → 23.3조원)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6.4조원 → 16.1조원)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4. 재정운용 과제

NABO는 국가채무를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했는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의

지출 감축 의지와 현실적인 지출 구조조정 여력을 고려했을 때 가장 실현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재량지출이 2015~2019년 연평균 1.4% 증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9년에 43.4%로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2014년에 34.5%로 OECD 평균(113.8%)보다 낮으나 경제수준,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구조적 재정수지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재정준칙 도입, 분야·부문 단위의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Review)를 통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출구조조정, 종합적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기반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8호)

- 발간일 : 2015년 12월 30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발간등록번호 : 31-9700376-001366-07



1. 아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세 개의 화살로 비유되는 아베내각의 경제정책은 공격적인 양적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회복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 현황을 재정정책, 노동

개혁, 기업투자환경 조성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아베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지향적인 세제개편으로 기업투자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세수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근 3년간 아베정부의 재정정책은 성장률 제고와 기

초재정수지 개선 등의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향후 재정건전성 목표(2020년까지 재정흑자) 달성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일본정부가 전제하고 있는 경제전망(실질성장률 2.0%, 명목성장률 3.0%)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세출구조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부족하며, 재정개혁을 위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베정부의 노동개혁은 중장기 일본재흥전략의 일환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와 고용창출, 노동생산성 향상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문제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시간제도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이 지연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아베정부는 기업투자환경 조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특구 지정, TPP타결, 제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TPP타결을 통한 국내취약부문의 규제개혁과 국제적 영향력 강화, 기업의 수익성과 가계의 고용여건 개선을 통한 소비와 투자확대 유도 노력은 일정 성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향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출구조개혁, 고용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개혁,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약부문 구조조정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아베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이나 공급부문 개선 없는 수요확대 정책은 그 효과가 매우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미국 금리인상과 국내경제의 영향

2015년 12월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존 0~0.25%였던 기준금리를 0.25~0.5%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금리인상은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향후 금리인상의 속도와 수준에 대한 시각차가 상존하고 있어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미국은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을 본격화하였으나, 유럽과 일본이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 움직임을 나타냄에 따라 향후 주요국 간 정책의 차별화가 쟁점이 될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 국내 금융시장에 직간접적 영향이 가중되고 우리나라와 신흥국 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취약 신흥국의 경제여건이 불안정해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시장과 차별될 가능성도 있다.

3. 2015년 세법개정 주요 내용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회의에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총 11차에 걸쳐 의원발의안 및 정부제출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기본법」 등 9개 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으로, 「법인세법」 등 3개 법안은 본회의에서 제안된 수정안 형태로 의결되었다.

2015년 세법개정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

세 근거 마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강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고급사진기 등 일부 품목 제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의 결과, 국세수입 예산은 당

초 정부안(223.1조원)에 비해 2천억원 감액된 222.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주요 세목별 감액 규모는 「소득세법」 -1천억원, 「부가가치세법」 -288억원, 「개별소비세법」 -146억원 등이다.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사회·행정

- 발간일 : 2015년 6월 1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811-9 93350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현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총괄·다부처, 경제·산업, 사회·행정 3가지 유형별로 총 23개 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50건의 시정제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고, 각 부처의 개별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재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8건의 법령개정제안, 주택정책의 궁극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14건의 성과관리제안,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기술화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중복사업 간 통합 또는 예산조정을 검토하는 등 12건의 예산편성 방향제안 등 총 84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사회·행정” 유형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평가»,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 평가»,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 평가»,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 평가»,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 평가», 「지

역경찰 인력운용 평가», 「중간처우 교정시설 사업 평가」 등 총 10개 주제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결과,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미흡 문제가 드러났고, 인구고령화 추세 고려 시 보다 근본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직장·지역가입자의 상이한 부과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법정 국고지원 규모를 준수하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에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관련 대책을 강구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의료사업」 평가결과, 권역 전문 진료센터 설치사업의 관리·감독 수단의 확보 등 후속정책을 마련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의 선정 평가항목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요구도의 비중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경우, 대학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 대학 선정 평가에서 다른 고등교육정책과의 연계에 따른 높은 가산점 비중을 낮추고, 창업교육 활성화 사업은 중소기업청의 사업과 유사하므로 연계하여 추진하며, 고등교육기관인증획득 여부를 ‘대학알리미’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사업」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정확한 취약계층 참여현황을 관리하고, 고용보조금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라 사업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투입 예산 대비 고용인원 등 재정효율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취업여성 자녀양육지원사업」은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산업단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운영을 확대하며, 육아 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활용 규정과 관련하여, 노동시간 기준으로 이용기간을 계상하고, 분할방식을 근로자와 고용주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이용 후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교육훈련에 높은 비중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서비스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희망키움통장II 사업의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내일키움통장 유지율 제고를 위해 가입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경찰 인력운용」 평가결과, 지역경찰관 증원과 관련된 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향후 이에 따른 현원증가 및 예산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야간근무수당을 상향 조정하여 자발적 야간근무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중간처우 교정시설사업」은 교정성과가 일반 교정시설에 비해 높은 편이나 시설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다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희망센터는 기업에 부담이 크므로, 운영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경제·산업

- 발간일 : 2015년 6월 1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810-2 93350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현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총괄·다부처, 경제·산업, 사회·행정 3가지 유형별로 총 23개 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50건의 시정제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고, 각 부처의 개별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재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8건의 법령개정제안, 주택정책의 궁극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14건의 성과관리제안,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기술화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중복사업 간 통합 또는 예산조정을 검토하는 등 12건의 예산편성 방향제안 등 총 84건의 개선사

항을 도출하였다.

“경제·산업” 유형에서는 「국가R&D사업 운영체계 평가」,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운영성과 평가」,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 평가」, 「수도권 철도구축사업 평가」, 「쌀 산업 발전대책사업 평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평가」 등 총 7개 주제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국가 R&D사업 운영체계」를 평가한 결과, 중간평가 결과의 예산연계가 강화를 위한 평가의 일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 특정평가의 대상 사업군의 범위를 확대하며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R&D집행부처별로 국가R&D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법령체계와 상이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어 공통규정의 법률화와 부처별 산재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제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경우 법령 미숙지, 평가결과 관리 및 확인 주체 규정의 흠결 문제가 있었으며, 간단한 수치표만 공개되어 있어 공개항목을 확대하고, 법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대규모사업 관리제도는 각 부처

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바, 일정규모 이상의 재정사업에 관해 전 단계를 포괄하여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세자금 보증지원 사업」의 경우, 전세자금 보증공급의 증가가 전세가격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고려한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 또한,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주택정책의 궁극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철도구축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 북부의 KTX 운행 계획을 포함하여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통해, KTX와 GTX 노선의 효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도권 KTX사업 구간을 서울~시흥에서 수서~평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예산 절감을 위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최적 대안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KTX 및 GTX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편성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쌀 산업 발전대책사업」의 경우 쌀직불금

이 대규모 농가에게 집중되고 있어 직불 방법의 세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실적이 저조하므로, 보장재해, 보장수준 등 농업인의 차별화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들녘경영체 지정요건에 농가호수 및 경지규모에 대한 제한 요건이 없어 대농농가도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영세·고령농에 대한 우선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평가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가정용 태양광 사업의 발전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며, RPS 보급목표를 충족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이행 과징금은 신재생에너지보급에 재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보급 목표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은 매년 신청기업의 하향평준화가 관찰되어 양적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선정기업의 R&D 집약도가 선정 후에 하락 경향을 보이는 등 혁신성 하락이 우려되므로 사업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초자료관리 부실과 사업성과에 대한 과대평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 외부기관에 의한 주기적인 성과점검이 필요하다.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총괄·다부처

- 발간일 : 2015년 6월 1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809-6 93350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제4호에 근거하여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성과 중심의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정책사업, 최근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현안, 국회 상임위원회의 평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총괄·다부처, 경제·산업, 사회·행정 3가지 유형별로 총 23개 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재정 안정화 전략을 조속히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50건의 시정제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화하고, 각 부처의 개별 법령과 행정규칙에 산재된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8건의 법령개정제안, 주택정책의 궁극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및 주거비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등 14건의 성과관리제안, 국토교통부의 국토교통기술화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유사·중복사업 간 통합 또는 예산조정을 검토하는 등 12건의 예산편성 방향제안 등 총 84건의 개선사

항을 도출하였다.

「총괄·다부처」 유형에서는 「재정성과관리제도 평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 평가», 「응급의료사업 평가», 「생태하천사업 평가», 「범죄피해자보호사업 평가」 등 총 6개 주제에 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재정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결과, 신뢰성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하고, 성과지표의 결과지향성을 강화하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 집행단계에서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에 대한 평가결과, 일부 기금의 과다 보유한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목표수익률을 획일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기금별 달성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수익률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실현수익률이 무위험수익률보다 낮은 경우 등 운용성과가 부실한 일부 기금은 운용성과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령 및 보건 부문 복지지출 수준 국제비

교」를 실시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 등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지출수준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노령 및 보건부문 복지지출 적정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적절한 준거모형을 설정하여 재정투입 대비 복지지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응급의료 사업」은 119구급대의 5분 이내 현장도착 비율이 매년 감소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119구급대원 및 1급 응급구조사를 보다 충원하며, 늘어나는 수요만큼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수요추정과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사업」은 하천경관 개선과 주민들

의 여가 활용 및 친수활동 증진에 주력한 나머지, 생태계 복원 측면에서는 미흡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엄밀한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사업 대상 하천을 선정하고, 자연 하천을 보존 또는 복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관리 지속성 담보를 위하여 중앙정부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생태하천사업 정보시스템(DB)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보호사업」은 강력범죄피해자 중 일부만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치료에 대한 안내 및 피해자와 1차 접촉기관인 경찰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는 성격상 범죄자피해보호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에 제한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발간일 : 2015년 6월 1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이홍석 민병찬 전수연 안옥진 나유성
- ISBN : 978-89-6073-814-0 93350



2015년 6월 현재 316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공공기관 정부지원액은 57.5조원으로

로 집계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4년 520.5조원으로 국가채무 530.5조원의

98.1%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출자, 출연, 보조 외에 부담금, 위탁 및 독점 수입, 자체수입 등 다양한 수입을 기반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회의 결산 심사는 정부 예산을 통한 출자, 출연,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전체 사업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공공기관 재무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분석을 담아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중점 사업으로 평가를 요청받은 과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결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중점 평가결과, 18개 부채 중점 관리기관의 부채는 2013년 435.7조원에서 2014년 437.1조원으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구분회계를 통해 파악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구

분회계 고유사업 단위에 정부의 공공요금 및 손실보전 관련사업 113.2조원이 포함되어 있어 부채의 책임소재 구분 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 고유사업 간 세부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경영평가제도는 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컨설팅 기능이 미흡하므로, 기관에게 자율을 부여하고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사업평가의 일관성·엄밀성·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별 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투자사업의 수요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해 교통 SOC 투자사업 DB를 구축하고 중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다 적립된 손실보전 준비금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기금으로 출연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를 특정사업에 배분하도록 한 법령개정 필요가 있다.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는 용자사업 금리·취급수수료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자금 수요 실태조사를 통해 식품외식종합자금의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846-1 93350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계기로, 성과 중심의 예산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부처의 성과관리 현황 및 2016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예산과의 연계 강화 등 정부는 성과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 성과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재정사업 규모, 국책사업 수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13개 주요 부처를 선별하고, 각 부처의 성과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3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재정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심층평가), 국회에 의안으로 별도 제출되는 기금운용평가 및 존치평가,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등 6개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를 실시하였다.

먼저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 성과정보의 신뢰성 부족, 성과정보와 예산 간 연계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3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 성과지표의 대표성·결과지향성 부족 등 성과정보의 낮은 신뢰성 문제와 함께, 성과관리 체계와 예산체계의 불일치, 성과미흡 사업

의 예산안 연계 미비 등 성과정보와 예산 간 연계 부족의 문제가 여전히 발견되고 있었다.

기금평가와 관련하여, 기금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사업 단위의 사업운영 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의 경우 평가 결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 관정체계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부처별 성과관리 현황에 대한 평가 결과, 성과미흡 및 예산과의 연계부족, 정부 내 성과평가의 일관성 부족, 정부 성과평가와 외부 평가 결과 간 괴리, 성과평가 체계 개선 필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13개 부처별 2014년도 성과보고서, 2012~2014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고보조사업운용평가, 기금운용/존치평가 등 다양한 성과평가 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과관리 현황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째, 성과평가 결과 성과가 미흡함에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산안 편성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동일한 대상사업에 대하여 정부 내 다양한 성과평가제도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리는 등 평가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경우도 발견되었다. 셋

제, 국회, 감사원 등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성과평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평가대상 및 평가항목이 부적절한 경우 등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결과,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배제, 성과목표 간 연계미흡, 성과지표의 대표성/산출근거의 타당성/결과지향성 부족, 성과목표 상향 조정 필요, 신규 성과지표 필요 등 다양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의 문제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재정사업의 성격

을 지니고 있음에도 성과관리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② 전략목표-프로그램 목표, 또는 프로그램 목표-단위사업 간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 ③ 성과지표가 사업의 핵심 내용을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 ④ 성과지표의 산출근거가 비합리적인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경우, ⑤ 달성성이 용이하도록 성과목표치를 낮게 설정하는 경우, ⑥ 성과지표가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측정하지 못하고, 투입 위주 또는 단기적 성과 위주로 설정되는 경우, ⑦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신규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 등 7가지 유형으로 사례를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14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변재연 민병찬 전수연 나유성
- ISBN : 978-89-6073-849-2 93350



정부는 2012년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9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가 급증하면서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중요한 정책목표로 대두되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증가 원인을 규명해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보고서는 39개 공공기관 중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발표 등으로 중점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부채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이행가능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총괄 분석” 결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취지에 따른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차입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차입금 상환계획 수립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정상화대책에 따른 부채감축계획은 낙관적 전망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부채감축 실적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무부처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규제로 공공요금이 원가에 미달하여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원가산정의 투명성 강화, 부적절한 투자로 인한 원가부담 문제 개선 등을 통해 공

공요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 분석”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기임대주택 재고를 감소시키는 10년 임대주택 조기매각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상의 부채감축 실적이 미흡하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므로 향후 주무부처는 국고비율 조정, 철도자산 매각 대금활용 등 정책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부채감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 및 미상환액 증가에 따라 재무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취업 연계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농촌진흥청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2. 현안분석 · 예산정책 보고서

경제현안분석 제87호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발간일 : 2015년 2월 13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집필 : 채은동, 태정림
- ISBN : 978-89-6073-801-0 93350



본 보고서는 2013년 말 취득세 법정세율 인하로 인한 주택거래량 효과를 취득금액별, 기초자치단체별로 실증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효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거래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는 주택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취득세 법정세율을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 2~4%에서 1~3%로 인하하였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률을 기존 5%에서 11%로 6%p 인상하였다. 게다가 2014년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에 따라 8~11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여 2014년 거래량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을 초과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행하였다. 먼저 기초자치단체별 주택거래량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여 패널분석한 결과, 168개 기초자치단체별 자료를 이용한

경우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주택거래량은 0.347~0.390% 증가하고 취득세추가감면을 시행하면 주택거래량은 21.7~24.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택거래량을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취득금액별 거래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취득세율을 1% 인하할 경우 주택거래량이 0.288% 증가하고, 종속변수를 취득금액별로 OLS 분석한 결과 취득금액이 증가할수록 취득세율 인하효과는 점차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취득금액별 세율인하효과 추정치를 이용하여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거래량 증가정도를 계산하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주택금액별로 12.4~26.3%씩 주택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동 자료를 이용하여 2014년 주택거래량을 전망하면, 2010년(취득세 추가감면이 시행되지 않은 가장 최근 연도)에 비해 17.2% 증가한 13.7만건이 증가한 92.8만건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취득세 전후 지방세입을 계산하면,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지방세입은 4.5조원에서 2.9조원으로 연간 1.6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율 인하후 주택거래량이 추가로 13.7만건 증가한 새로운 시장균형점의 지방세입은 2.9조원으로 기존 균형점에 비해 세입이 1.6조원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2.4조원의 지방세입이 감소한다는 가정 하에 지방재정 보전책을 세웠으며, 동 금액은 지방세입 순감소분 1.6조원에 비해 7천억원 이상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율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분과 정부 보전액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가 신규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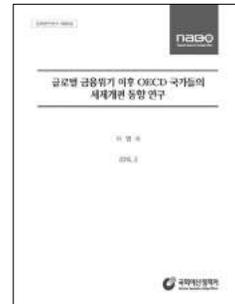
량에 따른 지방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감소한 지방재정수입을 적시에 보전해 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는 사전보전 방식을 채택하였다. 2011년 취득세 추가감면의 경우 정책 시행후 지방재정 감소분에 대해 사후정산을 하였으나, 법정취득세율 인하의 경우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사전정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로 인해 과다보전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차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현안분석보고서 제88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계개편 동향 연구

- 발간일 : 2015년 2월 16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집필 : 이영숙
- ISBN : 978-89-6073-802-7 93350



1980년대 초 미국의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조세정책 기조가 견인차 역할을 한 이후 많은 국가들에서 소득세율 인하와 세원 확대, 소비세제 강화 등의 방향의 세계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2008년 글

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이후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 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시기별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경기부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율인하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2010년 이후에는 대다수 국가들의 재정위험이 높아지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정책이 시행되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주요 5개국들의 조세동향을 보아도 이러한 조세정책의 흐름이 유사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5개국 중 독일을 제외한 영국과 프랑스, 미국, 일본 4개국에서 모두 2010년 이후 개인소득세율이 인상되었고,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과 일본 등 4개국 모두에서 부가가치세율이 인상되었으며, 법인세는 미국과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서 세율이 인하되었다. 단, 일본은 2011년 대지진 복구를 위한 부가세(surtax)를 2014년까지 과세하였고, 프랑스는 재정건전성 회복 재원 마련을 위해 2016년말까지 특정 소득규모 초과구간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tapering), 유럽 재정위험 및 경기회복 지연,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저성장세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지속되며 우리나라의 재정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속화와 인구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복지지출 소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국가의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향후 예상되는 재정위험을 사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OECD(2013.3)는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본에 기반한 기업활동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고급 인적자본 이탈이나 국내 자본투자 저해 등 경제적 부작용이 클 수 있어, OECD 평균(18%대) 대비 낮은 부가가치세율(10%) 인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우리 경제가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적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이고 조세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향후 재정수입 기반 확보를 위한 조세정책의 방향은 OECD 등 관련 국가들의 조세정책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각국의 조세구조에는 세율이나 조세감면 제도 등 각국의 조세정책의 차이와 함께 근본적으로 과세베이스를 결정하는 경제 사회적 구조가 반영됨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순한 국제비교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조세구조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발간일 : 2015년 9월 24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세제분석과
- 집필 : 채은동, 이영수
- ISBN : 978-89-6073-845-4 93350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출 현황 및 관리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 현행 조세지출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는 약 33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조세지출제도 215개 항목을 운영하고 있으며(2014년에 작성된 조세지출예산서 기준), 최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조세지출 재정소요액의 경우, 기준조세체계와 집계범위가 국가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국세지출액 규모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다만 통계자료상의 단순비교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조세지출액 규모는 미국(37.8배), 영국(9.9배), 캐나다(6.5배)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고 독일(0.7배)에 비해서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규정이 없는 80개 항목의 감면액이 21조원에 달하나 현재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조세지출항목에 대해 일몰도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세지출 중 일몰이 없는 항목

(80개, 감면액 21.2조원)의 비중이 상당하나, 평가는 현재 일몰도래 항목 위주로만 이루어져 제도 관리에 미비점(loophole)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모든 항목에 대해 일몰을 도입하되, 제도별 특성 등에 따라 일몰기간을 단기(2~3년)와 중기(4~7년) 등으로 차등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독일은 전체 감면액의 74%를 차지하는 주요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의 연구기관(해외기관이 법인세 항목 평가)이 2년 동안 평가를 수행한 후 지속적으로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세지출 도입목적에 한정하여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제도를 개정할 경우 이에 대해 제한을 두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다각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급격한 조세지출의 증가를 막는데 유효할 뿐 국세감면액의 감소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은 신규 조세지출 도입시에는 특정 목적으로 한정하여 조세지출 항목수 증가를 제한하고, 기존 제도를 개정할 경우 조세지원을 재정지원으로

대체하거나 기존 제도를 축소하도록 권고하여 조세지출을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평가 15-01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 발간일 : 2015년 2월 1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안옥진
- ISBN : 978-89-6073-799-0 93350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은 2014년 12월 현재 397개이며, 지방직영기업 254개와 지방공사·공단 143개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수익구조의 개선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 중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지방직영기업)와 도시철도공사(지방공사), 부채 과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지방공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평가하였다.

상·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 공기업의 경우 설비투자를 임대형 민간투자방식(BTL)으로 진행함에 따라 부채규모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도시철도공사 역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도시철도공사에 시설투자비 등으로 지원하는 지원액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낮은 경영 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지무임승차로 인한 운임 감면, 감가상각비와 인건비의 비효율 개선 등의 해결이 필요하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이용자수 과다추계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추가 사채발행을 위한 재무비율 유지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자본을 출자하고 있으며, 향후 부채 감축계획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출자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채 감축 외에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이에 관리·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 구분회계제도 구분

단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적정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5-02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 발간일 : 2015년 9월 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한정수
- ISBN : 978-89-6073-839-3 93350



우리나라 복지분야 총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고, 2015년 115.7조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0.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비교를 통한 평가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전체 및 그 하위부문의 지출수준을 대상으로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하여 수행하

였다.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90~2014년 공공사회복지분야 전체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61.98, 하위부문인 노령부문 35.68, 유족부문 75.85, 근로무능력부문 20.83, 보건부문 84.33, 가족부문 51.97, 적극적노동시장부문 46.06, 실업부문 42.88 등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국가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부양인구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속도는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생태하천 사업 평가

- 발간일 : 2015년 9월 4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김상우
- ISBN : 978-89-6073-840-9 93350



생태하천 사업은 하천 수질개선, 친수시설 설치, 하천 생태계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관리 사업으로,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동 사업에 투입된 2014년도 예산은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 2,567억원,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사업 7,653억원 등 총 1조 220억원이다. 본 보고서는 생태하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편익을 과대 추정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된 8개 사업 모두 사업지 인접 주민들에게 주로 혜택을 줘에도 불구하고,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편익을 추정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평균 60.1%에 이르는데, 그 중에서 절반 가까운 응답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편익의 과대 추정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동 사업은 하도의 직강화(直江

化), 준설, 대형보의 건설 등으로 인하여 하천 생태계를 호소화함으로써 녹조 증가, 사후관리 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자생적인 하천생태를 복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생태하천 사업은 모두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 및 인력상의 제약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후 모니터링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개선방안으로는 경제적 타당성이 낮고, 하천 생태계 복원에 역행하는 4대강살리기 생태하천조성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 편익 과대 추정 방지 등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관리 강화, 환경부의 하천생태계 복원 위주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생태하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확대 및 정보시스템(DB)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사업평가 15-04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 발간일 : 2015년 9월 1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행정사업평가과
- 집필 : 하현선
- ISBN : 978-89-6073-841-6 93350



노인장기요양사업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의 건강증진 또는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노인 등의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해결하고자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201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4조 1,847억원, 지출은 3조 8,497억원이며, 2015년 기준 예상 재정운용규모는 4조 3,912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라 2013년부터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제1차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13~2060년) 보고서에는 전체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액만 있을 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각각의 보험에 대한 재정추계가 없다. 하지만 최근(2008~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연평균 지출증가율(38.1%)이 수입증가율

(29.8%)보다 높고, 다른 사회보험보다도 지출 속도가 빠르며, 향후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기적인 재정전망 및 운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지 장기요양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요양인정과 등급판정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았던 기관 중 약 25% 가량은 2년 후 평가에서도 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설·인력 등 법정 기준에 미달한 기관을 지정취소 등의 단속권한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5-05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 발간일 : 2015년 9월 1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심지현
- ISBN : 978-89-6073-842-3 93350



기금 여유자금은 특정 시점에 기금이 보유한 자산 중 기금의 고유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으로, 2014년 정부 63개 기금(외평기금 제외) 여유자금 운용규모는 연중 운용평잔 기준 524조원이다.

44개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규모가 과다한 기금은 7개, 과소한 기금은 6개로 분석되었다. 7개 기금은 과다한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6개 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과소하므로, 수입-지출 구조개선 등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다수 기금이 획일적으로 낮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 수익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는바, 기금별 합리적인 목표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를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원칙적인 목표수익률 도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기초로 기금별 달성가능한 합리적인 목표수익률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5년간 기금 중장기자산의 운용성과는

전반적으로 부진하였으며, 사회보험성 기금은 자산배분조정 및 상품운용 두 측면에서 모두 성과가 낮았다. 최근 5년간 중장기자산을 운용한 23개 기금의 운용성과는 시장 평균보다 낮았으며, 대형 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운용평가 시 성과부진의 원인을 심층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 기준 최소 9개 기금이 1,235억원의 여유자금을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금리 0%로 운용하는 등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장기재정안정화전략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제도개편 논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해외 주요 연기금에 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수익률의 낮은 원인은 보수적인 목표수익률 설정 및 자산배분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재정안정화 전략 수립 시 향후 자산운용전략에 대한 논의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주거안정사업 평가

- 발간일 : 2014년 9월 1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진익·한노덕
- ISBN : 978-89-6073-843-0 93350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마련 지원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부차적 효과로서 전세가 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세금 상승효과를 차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불가능지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고 과학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주거비부담가능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전세자금대출 보증 지원은 주거안정 효과를 감소시킬 요인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공급은 주거안정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거나 임차인의 지불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은 저렴한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보증 지원이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절감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소득분위별 주택구입가능수준을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부터 소득 5분위 기준 1분위-3분위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차시장의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전세자금(보증)지원 및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 즉 분양 위주 지원에서 벗어나 시장수요를 감안한 임대지원으로의 전환, 자가 및 전세 지원과 더불어 월세 지원으로의 확대 등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부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예산구조와 사업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5-07

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2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강세욱
- ISBN : 978-89-6073-863-8 93350



정부는 2015년 6월 “청·장년,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상생고용을 위한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5대 분야, 36개 노동시장 개혁 과제)을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와 관련하여 저임금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근 확대·신규 편성되는 예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업 종료 이후 노동이동 상태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간일자리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하여 참여하고 있어 재정지출의 비효율 및 저임금 함정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청년층 대상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성과평가를 강화하여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률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기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고용했을 인력을 정부지원 인턴으로 대체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최근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중소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지나치게 사업성과에 몰두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현재와 같은 사업주 위주의 지원방식은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단기적인 보완책으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규직전환지원사업’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주에게 유인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용 관행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게

되면 집행률을 제고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는 정규직 여부보다 임금수준 향상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금수준 향상을 전제로 지원금을 지급하되 정규직전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은 유사한 세제·재정지원 제도까지 고려시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액이 2년간 최대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등 중복지원의 가능성이 있다. 동 사업으로 인해 지원금이 없어도 이미 정규직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사업주의 인건비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다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중복지원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금 지

급 심사 시 자료 제출 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재정사업 뿐만 아니라 올해 신설된 조세지출을 중심으로 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비정규직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많고 고용유지의무 등이 완화되어 있어 이러한 세제지원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 제도는 과거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폐지했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지원방식이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특별한 제도개선 없이 또 다시 유사한 제도를 신설한 측면이 있는바, 1년 단위로 성과평가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5-08

농업보조사업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21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조윤희
- ISBN : 978-89-6073-864-5 93350



최근 정부는 국가보조금 전반에 대해 검토 후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016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바 있다. 국회에서도 세수부족과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보조금의 효율적 이용과 재원배분

관련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농업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검토하였다.

농업부문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4조 원에 이르며, 이 중 농업 보조금은 6조 4천억 원이다. 농업보조사업 평가 결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표사업인 쌀소득 보전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효과가 미흡하며, 밭농업직불제와 친환경직불제 사업 또한 농민의 참여부진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며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공동작업 및 공동경영을 통해 농가경영의 혁신을 꾀하고자 도입된 들녘경영체사업의 경우도 농기계의 공동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품질 쌀생산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 농가의 유지 확대를 통해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도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

소득세 감면제도의 경우, 최근 자작농가수가 감소하고 임차농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성과가 미흡하며 동 제도의 실질적 수혜자는 자가상승이 큰 지역의 농지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경영비를 지원하고자 도입된 농축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경우 농기계와 비료·농약의 과잉공급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농업보조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여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재정지원과 조세감면을 통합 운영하고, 농업 보조금 재원배분의 구조조정 기준을 설정하여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평가 15-09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22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집필 : 이채정
- ISBN : 978-89-6073-866-9 93350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정부는 장애인연금의 지원대상을 늘리고, 지원 수준을 높이는 등 장애인복지정책을 확대해왔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사업의 예산은 2012

년 8,493억원에서 2016년 1조 9,011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정부는 장애등급제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이 빈곤선 이하의 가구가 빈곤선에 근접하도록 지원하는 정도(빈곤갭 완화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급 및 4~6급 장애인가구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의 빈곤갭 완화효과가 2011년에 비하여 2014년에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반영한 법률개정 및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수당의 원활한 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기관

및 인력 관리체계를 합리화하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확대에 비례하여 활동지원기관의 운영비가 증가하지 않았고 기관유형별로 인건비의 액수 및 총당재원이 상이하므로, 보건복지부는 현행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급방식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향후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 및 추가비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급 수준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활동지원기관 운영비 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수가체계 다양화, 활동지원기관 평가방법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5-10

국가R&D 정책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27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임길환
- ISBN : 978-89-6073-865-2 93350



우리나라의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국가R&D 총투자는 규모 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섰다. 반면에 R&D 현장에서는 전략 없는 R&D투자 확대에 따른 혁신의 위기에 봉착하였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정부R&D혁신방안”을 마련하고 R&D혁신시스템 개편을 통해 선도형 R&D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R&D정책 거버넌스, 국가R&D사업 운영체계 및 국가R&D 재

정운용 평가를 통해, 혁신형 R&D로의 체질 전환을 위한 효과적인 국가R&D정책 지원체계 및 재정운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국가R&D정책 거버넌스 평가 결과, 첫째, 국가R&D정책의 상위조정기구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독립적인 사무국을 운영함으로써 조정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야별로 난립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단일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기술정책지원기관에 대한 통합추진을 보류하고, 과학기술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가R&D사업 운영체계의 평가 결과, 첫째, R&D과제 선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R&D 과제 기획과정의 참여자에 대한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확대적용하고,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사후통제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승격하고 부처간 중복적인 규정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R&D사업의 중간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특정평가 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가R&D 재정운용 평가 결과, 첫째, 정부가 R&D 투자규모를 과대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래성장동력 분야의 대상사업을 재조정하고,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R&D 재원배분 과정에서 상위조정기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 15-11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 발간일 : 2015년 10월 30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경제사업평가과
- 집필 : 한정수
- ISBN : 978-89-6073-846-1 93350



최근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의 여파로 매출 감소, 부채 및 폐업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민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 경쟁력 약화는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 등 생활밀접형 업종에 대한 과다진입으로 인한 경쟁심화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의 자영업 지원 정책이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창업지원 위주로 이루어져 온 결과 자영업의 과다 문제는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 수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와 함께, 자영업 규모에 대한 재정지출의 영향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우리나라와 OECD 국가들의 자영업자 및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자영업 수준을 평가하였다. 자영업자 비중에 대한 평가는 국제비교지수(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1990~2013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170.98로 OECD 26개국 중 2위,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국제비교지수 평균은 190.58로

OECD 32개국 중 2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영업자 비중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이나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 등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는 자영업자 지원 정책 방향을 전환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생애주기별 단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입·퇴출단계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 간 경쟁완화와 성장단계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평가 15-12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

- 발간일 : 2015년 12월 18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공공기관평가과
- 집필 : 민병찬
- ISBN : 978-89-6073-875-1 93350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산업현장 수요와 맞지 않는 대학 교육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년

고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고령자, 고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도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일부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고용 관련 정책의 효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고용 확대 정책이 신규채용 확대와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고용관리 정책을 ‘고용안정 및 신규채용 확대정책’과 ‘정원관리 정책’, ‘사회형평적 인력활용 정책’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되면 고령층으로 갈수록 노동생산성과 급여의 불균형이 커지는 연공급의 부작용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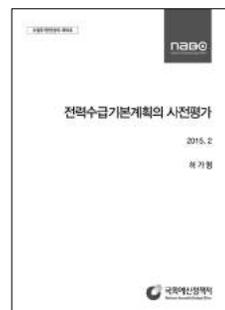
다. 다만, 정부권고안에 따라 설정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강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청년고용 의무제의 경우에도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년연장 효과가 안정될 때까지 청년고용 의무제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의무채용인원에 대해 초과현원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원관리 정책의 경우 기관 간 협업체계를 통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진단을 강화하고, 시장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사회형평적 인력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시정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기관 특성상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6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 발간일 : 2015년 2월 9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허가형
- ISBN : 978-89-6073-798-3 93350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경제활동의 기초 요소이며, 산업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

과가 크다. 이에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설비와 발전원의 규모를

정하고 있다. 발전설비규모를 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중요한 것은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는 도입되면 최소 20년에서 최대 100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배출량과 천연가스 및 석탄수입물량,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분산형 전원의 비중에도 영향을 준다. 송전망을 건설해야 하며, 향후 15년간의 발전설비에 대한 연구개발도 발전원과 발전설비에 근거하여 정해진다.

전력정책은 발전설비가 확정된 이후에는 바꾸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에너지 정책 전반에 영향력이 높은 설비계획의 특성으로 인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본 고는 국회의 사전검토회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평

가를 수행하였다.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2027년까지 발전설비의 준공지연이나 송전설비의 지연, 노후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만료를 고려하더라도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력수요는 과거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어 일부 발전기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전력설비에비율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전력수요의 변동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원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기저발전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신규 기저발전원의 도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발전원별 발전비용 산정과 장기적 관점에서 분산형 발전원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전력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7호

항만 적정하역능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발간일 : 2015년 12월 24일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산업사업평가과
- 집필 : 안태훈
- ISBN : 978-89-6073-876-8 93350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국가기간시설이다. 또한 전세계 교역량의 90% 정도가 항만물류 활동을 통

해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과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

리를 위해 항만에 대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항만투자는 타 교통시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적절한 항만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 중국과 일본의 항만들과의 경쟁력 측면에서는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만에 대한 많은 투자가 요구되지만, 효율성 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경쟁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항만의 적정하역능력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항만투자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와 감사원은 적정하역능력이 적게 산출되어 항만투자가 과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에 측물동량을 선석당 적정하역능력과 비교하여 항만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선석당 적정

하역능력이 하향되면 항만 개발 규모가 증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평가에서는 적정하역능력 산정과 관련된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항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만의 물동량은 계절 및 요일에 따른 변동성을 갖고 있으므로, 연간 하역량을 의미하는 적정하역능력은 효율적인 항만투자의 기준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현행 컨테이너 터미널의 적정하역능력은 부적절한 방식으로 산정되며, 실제 일평균 컨테이너 처리량보다 적게 산정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일 기준의 하역능력과 서비스 수준을 기준으로 항만 개발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3. 특별·연구·기획보고서

조세의 이해와 쟁점

— 조세개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조세지출, 통계편

- 발간일 : 2015년 7월 3일
- 발간부서 : 세제분석과
- ISBN : 978-89-6073-828-7 93350
978-89-6073-829-4 93350
978-89-6073-830-0 93350
978-89-6073-831-7 93350
978-89-6073-832-4 93350
978-89-6073-833-1 93350
978-89-6073-834-8 93350



조세는 국가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나, 조세부과가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과 소득분배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공평한 과세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이해하고 주요 선진국들의 조세체계 개편 논의 및 방향 등을 파악해 글로벌 조세흐름과 동조하는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쟁점과 논의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정정책처는 이러한 취지 하에 조세제도와 세법개정안에 대한 분석·평가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부터 매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

치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이해와 현안을 중심으로 한 「조세의 이해와 쟁점」 시리즈로 발간하였다. 작년에는 주요 세목에 대한 그간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함과 동시에, 국제거래 확산에 따른 과세상의 문제 등을 다룬 국제조세편과, 각 세목의 주요 통계자료를 요약·정리한 통계편을 추가하였다. 2015년에는 주요 세목 등의 요약물 간추린 조세개요편과,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지출편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동 보고서는 각 세목별로 이론적 배경·입법 및 주요 개정연혁 등을 바탕으로 과세체계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또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OECD 조세통계와 주요국 조세제도 현황, 최근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비교·정리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

세체계를 이해하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조세정책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였다.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 발간일 : 2015년 12월 7일
- 발간부서 : 경제분석실 경제정책분석과
- ISBN : 978-89-6073-847-8 93350



본 보고서는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60년까지 북한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세 가지의 통일 준비 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통일비용을 전망하였다. 남북한 교류협력의 시나리오는 첫째, 현재와 같은 제한적 교류협력(시나리오 1), 둘째, 북한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인도적 지원확대(시나리오 2), 셋째, SOC 투자 등을 포함한 경제적 투자가 활성화(시나리오 3)되는 3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통일비용은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남한지역의 66%수준까지 성장시키는 데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한다. 이는 2012년 기준 1인당 소득기준 남한 내 지역간(울산-전남) 격차인 68.2%를 고려할 때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 대비 2/3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 이후에는 통일비용이 아닌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비용으로 간주한다.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시나리오 3이 북한지역 소득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통일 이후 북한 1인당 실질 GDP 전망은 시나리오 3이 2026년에 남한 대비 11%에서 2060년 66% 수준에 이르는 반면, 동기간 시나리오 2는 7%에서 57%, 시나리오 1은 4%에서 3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비용의 추계항목은 사회복지분야의 주요 의무지출 및 투자비용으로서 급여 수준 및 대상은 남북한 소득격차 및 북한주민의 소득증가경로를 반영하여 분석하였다. 통일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 수준(66%)에 수렴될 때까지 발생하는 통일비용은 시나리오 3이 2060년까지 2,316조원, 시나리오 2가 2065년까지 3,100조원, 시나리오 1이 2076년까지 4,822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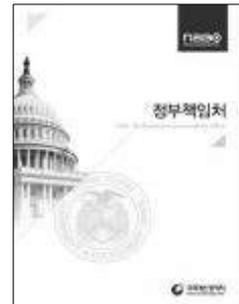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시나리오 3이 북한지

역 소득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경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긴장관계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 긴장관계가 어느 정도 존재하여도 추진할 수 있는 시나리오 2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적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통일과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지역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인구 고령화를 늦추어 양적으로 노동력 공급부족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식량공급 지원 및 의료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여 장기간 분단에 따른 이질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도적 지원은 남북한 신뢰형성 및 인적·물적교류를 확대시켜 민족적 동질감, 상이한 경제·사회체제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정부책임처

- 발간일 : 2015년 1월
- 발간부서 : 사업평가국 사회사업평가과
- ISBN : 978-89-6073-797-6 93350



미국의 정부책임처(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는 1921년 예산회계법(the Budget and Accounting Act of 1921)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의회를 지원하는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의회 소속 기관이다. 정부책임처는 행정부의 운영·활동·사업에 대한 감독·조사·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의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당시 정부책임처의 사업평가기능을 참조하여 사업평가국을 설치

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바, 정부책임처의 업무수행절차, 권한, 보고서 구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기능을 강화·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총 3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정부책임처 설립 이후 최근까지의 연혁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정부책임처의 조직과 예산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정부책임처의 주요 역할과 업

무 수행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부록에서는 정부책임처의 근거가 되는 1921년 예산회계법의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책임처의 최근 성과를 살펴보면, 2013년 기준 709건의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이 중 63%는 공공지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책임

처는 권고안에 따른 조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4년 전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추적·확인하고 있는데, 2009회계연도에 만들었던 권고안의 79%가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515억달러의 재무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측정되었다.



II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 요구사항의 조사·분석 업무

1. 일반 조사·분석 요구 및 회답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제5호에 의하여 국회의 위원회 및 국회의원의 조사·분석 요구에 대하여 회답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에 접수된 일반 조사·분석 요구는 모두 352건이다.

가. 2015년 처리 현황

| [실·국별 조사·분석 접수 현황] | |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사·분석 요구 현황] | |
|--------------------|-----|--------------------------|-----------|
| 실·국 | 건수 | 교섭단체 및 위원회 | 건수 |
| 예산분석실 | 99 | 교섭단체 | 새누리당 130 |
| 경제분석실 | 158 | | 민주통합당 200 |
| 사업평가국 | 95 | 비교섭단체 | 14 |
| | | 위원회 | 8 |
| 합 계 | 352 | 합 계 | 352 |

나. 최근 5년간 추이

| [최근 5년간 조사·분석 회답 현황] | | | | | |
|----------------------|------|------|------|------|-------|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 계 |
| 732 | 400 | 569 | 423 | 352 | 2,476 |

다. 신청 및 회답 절차

□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회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조사·분석(의안비용추계 포함)과 관련하여, 의원실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Support, NALS)을 서비스하고 있다.

NALS는 국회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의원실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 구분된 지원기관의 단일 창구를 제공하여 의원실이 효율적으로 조사·분석을 요청하고 회답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정보요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예산·경제 및 사업평가 관련 조사·분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의안비용추계요청]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 추계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NALS) 이용 화면]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자료요청관리 / 통계관리 / 공지사항 / Q&A / 시스템관리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자료요청 등록

Home > 자료요청관리 > 자료요청 등록

자료요청을 등록하세요.

01 입법정보 요청

02 법률안 입안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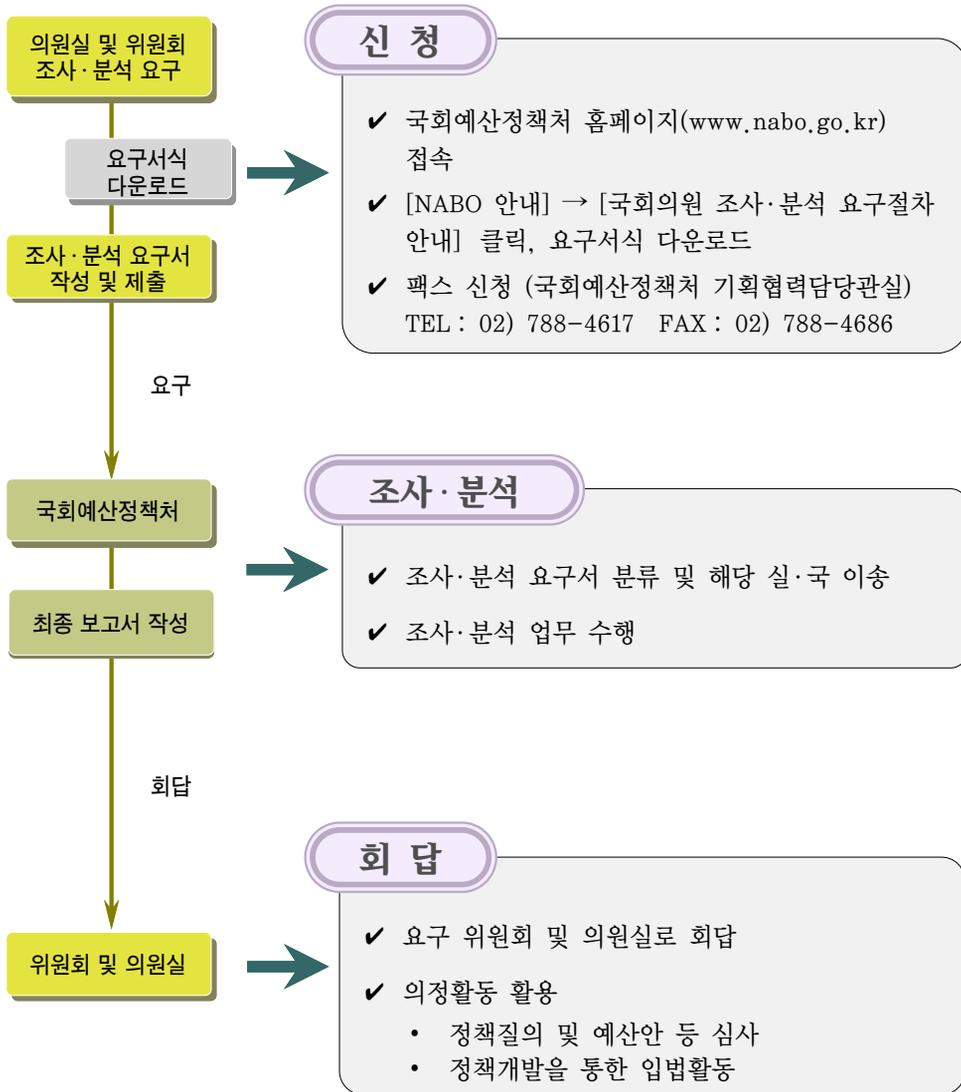
03 의안비용 추계요청

국회정보시스템 | 입법지식정보 | 예산안정보 | 국정감사정보 | 예산정보 | 회계정보 | 인사넷이동계 | 영상회의록 | 미디어자료관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
서울특별시 경복궁로 53(의정동) 1104호
Copyright © 대한민국국회 All rights reserved.

□ 요구서식을 이용하는 방법

요구서식을 이용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기존 방법도 가능하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2. 법안비용추계 현황

가. 법안비용추계 개관

「국회법」 제79조의2에 따르면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적 비용이 수반되는 법안을 제안하는 경우 반드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는 해당 의안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안의 통과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산분석실 법안비용추계1·2·3과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비용추계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서 국회의원 및 위원회의 추계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성한 비용추계서를 제공하고 있다.

준비된 법안의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려면 앞서 소개한 국회종합입법지원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의안비용추계요구서식을 작성하여 팩스(02-788-4686)를 통해 기획관리관실 기획협력담당관실에 송부하면 된다.

나. 법안비용추계 의뢰 및 회답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 출범 이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의원 및 위원회로부터 총 6,079건의 비용추계 의뢰를 받아 철회 처리된 522건을 제외한 5,557건을 회답하였다.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한 2004년에는 54건의 의뢰에 그쳤으나, 제17대 국회에서 연평균 153건, 제18대 국회에서는 연평균 487건의 의뢰가 접수되었다.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2015년 말까지 접수된 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3,520건으로 제18대 국회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2015년 3월 19일부터 의원 발의 법률안 비용추계서 작성 주체가 예산정책처로 일원화되고, 위원회 수정안·대안의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첨부 의무화됨에 따라 비용추계 의뢰가 급증하여 2015년에는 1,707건이 접수되었고 1,622건의 비용추계서가 회답되었다.

[국회에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접수 및 회답 건수]

(단위: 건)

| | | 의뢰 | 철회 | 회답 |
|---------|------------------|--------------|------------|--------------|
| 제17대 국회 | 2004 | 54 | 0 | 54 |
| | 2005 | 184 | 39 | 145 |
| | 2006 | 184 | 45 | 139 |
| | 2007 | 166 | 23 | 143 |
| | 2008 (~5. 29) | 23 | 4 | 19 |
| | 소계 | 611 | 111 | 500 |
| 제18대 국회 | 2008 (5. 30~) | 421 | 38 | 383 |
| | 2009 | 508 | 66 | 442 |
| | 2010 | 516 | 61 | 455 |
| | 2011 | 477 | 63 | 414 |
| | 2012 (~5. 29) | 26 | 3 | 23 |
| | 소계 | 1,948 | 231 | 1,717 |
| 제19대 국회 | 2012 (5. 30~) | 702 | 43 | 659 |
| | 2013 | 717 | 34 | 683 |
| | 2014 | 394 | 18 | 376 |
| | 2015 | 1,707 | 85 | 1,622 |
| | 소계 | 3,520 | 180 | 3,340 |
| 합 계 | | 6,079 | 522 | 5,557 |

주: 1. 2015년 12월 31일 접수 기준

2. 법안비용추계 건수는 전체 추계 건수 중 세수추계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비중

2004년 5월 이후 2015년 말까지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의원발의 법안은 7,761건(세수추계 제외)으로, 이 중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과에서 작성한 추계서는 34.6%에 해당하는 2,682건이다. 제17대 국회에는 그 비중이 23.5%였다. 제18대 국회에는 30.2%로 증가하였고 제19대 국회에는 2015년 12월 31일 현재 42.8%로 증가하였다. 2015년의 경우 690건의 의원발의 법안 첨부 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용추계서는 590건으로 85.5%이다.

[의원발의 법안에 첨부된 지출 비용추계서 중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추계서 비율]

(단위: 건, %)

| | | 전체지출 비용추계서 첨부발의법안 | 의원발의법안 지출비용추계서(a) | 의원발의법안 중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b) |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비율(b/a) |
|------------|------------------|-------------------------|----------------------|-------------------------------|-----------------------|
| 제17대 국회 | 2004 (5. 30~) | 144 | 144 | 15 | 10.4 |
| | 2005 | 352 | 322 | 77 | 23.9 |
| | 2006 | 343 | 286 | 76 | 26.6 |
| | 2007 | 560 | 413 | 111 | 26.9 |
| | 2008 (~5. 29) | 57 | 50 | 7 | 14.0 |
| | 소계 | 1,456 | 1,215 | 286 | 23.5 |
| 제18대 국회 | 2008 (5. 30~) | 776 | 623 | 181 | 29.1 |
| | 2009 | 1,024 | 925 | 285 | 30.8 |
| | 2010 | 860 | 771 | 248 | 32.2 |
| | 2011 | 962 | 863 | 253 | 29.3 |
| | 2012 (~5. 29) | 45 | 41 | 7 | 17.1 |
| | 소계 | 3,667 | 3,223 | 974 | 30.2 |
| 제19대 국회 | 2012 (5. 30~) | 937 | 873 | 271 | 31.0 |
| | 2013 | 1,142 | 1,060 | 368 | 34.7 |
| | 2014 | 771 | 700 | 193 | 27.6 |
| | 2015 | 769 | 690 | 590 | 85.5 |
| | 소계 | 3,619 | 3,323 | 1,422 | 42.8 |
| 합 계 | | 8,742 | 7,761 | 2,682 | 34.6 |

- 주: 1. 201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의원 발의법안을 분석
 2.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서의 첨부 건수는 법안의 국회 접수일자 기준
 3. 세수추계서 및 세수·지출공통추계서는 제외

라. 관련 보고서 발간

□ 2015 재정법령집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재정 관련 법률과 주요 하위 법령을 수록한 「재정법령집」을 발간하고 있다.



「2015 재정법령집」은 재정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존 재정법령집과 달리 법률·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대비표 형식으로 수록하여, 법령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 「2014 재정법령집」 발간 이후 제·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였다.

법령은 헌법 및 국회편, 국가재정편, 지방재정편, 국가 채권·채무편 등 모두 4가지 주제로 구분하였으며, 법령명을 알고 있을 경우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나다순 법령색인을 추가하였다.

3.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가. 세입관련 법률안 세수변화 추계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입과 관련된 의안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시작한 2004년의 의안비용추계 의뢰 건수는 5건에 불과하였으나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평균 180건 이상의 세입관련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였다. 2015년은 383건의 비용추계가 의뢰되어 전년에 비해 100%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회법」 개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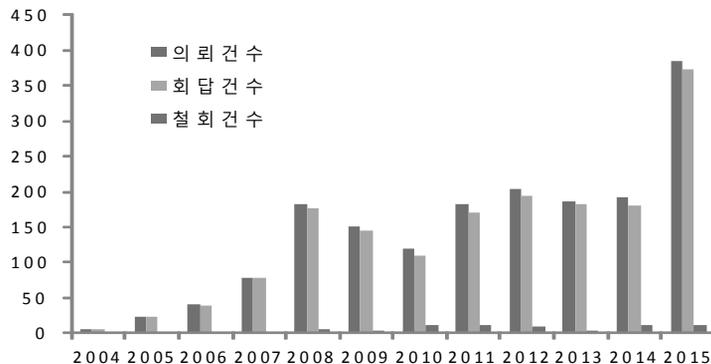
2015년 3월부터 비용추계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비용추계서의 작성 주체를 국회예산정책처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수정안 및 위원회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의 첨부 의무화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제도 개정 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비용추계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추계시스템 고도화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 비용추계서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입관련 법률안 의안비용추계 의뢰 및 처리 추이]

(단위: 건)

|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 의뢰건수 | 5 | 23 | 41 | 78 | 183 | 150 | 120 | 182 | 204 | 186 | 193 ¹⁾ | 383 ¹⁾ | 1,748 |
| 회답건수 | 5 | 23 | 39 | 78 | 177 | 146 | 109 | 171 | 194 | 182 | 180 | 373 | 1,677 |
| 철회건수 | 0 | 0 | 2 | 0 | 6 | 4 | 11 | 11 | 10 | 4 | 12 | 11 | 71 |

주: 1) 2014년 의뢰 건수 193건 중 1건은 2015년으로 이월됨.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의 접수 분포를 분기별로 살펴보면, 국회법 개정으로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작성주체가 일원화 된 2/4분기 이후의 의뢰건수가 1/4분기와 비교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분기에 전체의 36.7%인 141건이 의뢰되어, 동 기간에 상대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3/4 ~ 4/4분기에는 각각 90건(23.4%)과 87건(22.7%)이 의뢰되었다.

[2015년도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분기별 접수 분포]

(단위: 건, %)

|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합계 |
|------|--------|--------|--------|--------|---------|
| 의뢰건수 | 65 | 141 | 90 | 87 | 383 |
| (비율) | (16.9) | (36.7) | (23.4) | (22.7) | (100.0) |

2015년에 회답한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373건 중 292건(78.3%)이 세법관련 비용추계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가 118건(31.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포함) 일부개정안(56건)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53건)이 1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법」 일부개정안(21건)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8건)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세입관련 의안비용추계 회답 현황(법안종류별)]

(단위: 건, %)

| | 세법 | | | | | | 세법 외 | 합계 |
|------|--------|--------|--------|-------|-------|-------|--------|---------|
| | 조특법 | 지방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부가세법 | 기타세법 | | |
| 회답건수 | 118 | 56 | 53 | 21 | 8 | 36 | 81 | 373 |
| (비율) | (31.6) | (15.0) | (14.2) | (5.6) | (2.1) | (9.7) | (21.7) | (100.0) |

- 주: 1. 「조특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가세법」은 「부가가치세법」
 2. 「지방세법」에는 「지방세법」 외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포함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II

주요 사업 및 활동

1. 예산안 및 결산 심사 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대상으로 예산안·결산·기금관련 토론회와 더불어 각종 예산정책현안에 대한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가.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학술대회

1. 개요

2015년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재정지출 소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의 결산심사는 재정의 집행과정과 결과를 점검하여 재정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결산은 아직까지 성과평가보다 회계감사에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효과적인 결산심사를 위해서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이번 학술대회는 결산심사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준기 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광림 국회정보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광목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공동성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장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2. 발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김광목 예산분석실장은 ‘결산심사 문제점 및 개선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결산심사 제도의 흐름별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와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작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결산 부속서류에 ‘세입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국회가 결산심사를 법정기한인 8월 31일 내에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결산심사 일정과 국정감사·예산안 심사 일정이 중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7월 내 결산심사 완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2016년부터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이 9월 3일로 앞당겨지므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국회 결산심사 결과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정기한인 8월 31일보다 조기에 결산심사를 완료해야 하고, 조기 결산의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제출일을 15일 정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다년도·대규모 사업 및 전문기술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별 결산보고서 제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확대, 국회의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 및 홍보 강화, 결산의결 효력 관련 규정 정비, 결산과 예산의 연계 강화, 결산 시정요구 조치결과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국회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공동성교수는 ‘성과주의 결산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성과주의 결산의 의의와 주요 내용, 현실을 감안한 성과주의 결산의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공동성 교수는 성과주의 결산의 주요 내용으로 성과 목표·지표의 타당성 평가, 성과정보의 검증, 성과목표의 적절성 평가, 성과결정요인과 귀책·기여도 분석, 향후 성과향상 방안의 적절성,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성과주의 결산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추가비용이나 인력, 제도 등도 함께 정비되어야 하며, 성과주의 결산의 범위도 설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연구·분석을 위한 감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회 결산심사 강화 방안」 학술대회



3.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예산과 결산의 연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 서류의 보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하면서 법정기한 안에 결산을 의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부의 결산 제출기한을 앞당기는 문제는 외국의 사례와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제무재표 작성 등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였고, 결산 승인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성과주의 결산은 국가 재정의 효과성, 참여 주체들의 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계명대학교 윤영진 교수는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산정보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결산 제출기한 단축 없이 국정감사와 결산심의를 결합하여 심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세대학교 하연섭 교수는 OECD 국가 대부분은 예산심사나 결산심사 한쪽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국가가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모두 강화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인지 고민해 볼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끝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평가제도팀장은 최근 행정부의 결산 보고서를 검사하는 업무의 범위와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결산보고서에 대한 절차, 내용 등을 강화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보완하는 제도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결산 시 문제가 발견된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은 기구·인력의 중복, 예산문제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

1. 개요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 10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진행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기획재정부(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에서 먼저 설명하고, 예산안의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김광목 예산분석실장)에서 발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부는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 흐름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 예산보다 11.3조원 증액된 386.7조원 규모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최근 잠재성장률의 하락,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 재정을 둘러싼 여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대한 토론이 주를 이룰 정도로 재정건정성이 이슈가 되었다. 발제에 대한 토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 각 1명(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과 학계 전문가 2명(백웅기 상명대 교수, 하연섭 연세대 교수)이 참여하여 당초 토론시간을 넘겨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발제 및 토론에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두 분은 발제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정용덕 서울대 교수는 발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을 중간중간 요약하여 청중에게 소개하였으며, 매끄러운 진행으로 토론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발제와 토론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16년도 예산안이 어떤 모습인지, 정부가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이해하기 쉬운 그림으로 설명하여 발제 내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광목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핵심적인 분석 내용을 발제하였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정부가 고민하여 편성한 사업에 대해 그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집행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소개하였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정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표명해 주목을 받았다.

내년 예산안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한 발제와 토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정총량에 대한 평가

먼저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도하고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하였다. 총지출 증가율(3.0%)이 총수입 증가율(2.4%) 보다 높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는 ‘확장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추경 기준으로 볼 때 총지출 증가율이 0.5%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재정기조가 확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의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토론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었는데, 박범계 의원

은 2016년도 총지출 증가율이 정상성장률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긴축예산’이라고 하였으며, 백용기 교수 역시 정부의 확장기조에 대해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채무의 적정성에 대한 발제와 토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에 국가채무가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만 재정여건이나 경제상황이 다른 OECD의 다른 국가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증가율에 초점을 두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이나 고령화 수준과 유사한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금의 우리와 비교할 때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며 재정의 기본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현 정부가 세입확충을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의 국가채무 수준은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평가

기획재정부는 2016년도 예산의 분야별 자원배분이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문화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중점을 두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SOC 분야의 지출 규모를 올해 보다 축소하여 지출 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고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각 분야별 주요 쟁점을 언급하면서 인적 자원(human capital)이나 R&D 분야처럼 집중적으로 반복 투자되는 분야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연섭 교수는 토론에서 일자리, 교육, SOC 분야의 지출에 대해 주로 언급을 하였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구직자와 기업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교육 예산은 실수요자인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SOC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현재의 기준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뛰어 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재정개혁에 대한 평가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한 낭비요인 제거, 사업수 총량관리를 통한 보조사업수 축소와 비보조사업의 「One-out, One-in」(기존 사업 폐지에 한해 신규사업 추진 허용) 등을 소개하였다. 특

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일몰제(3년)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사업단위의 평가제도가 제한적이라며 분야별로 묶어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축소하는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가 밝힌 세입확충 방안 중 비과세·감면 정비는 사안별로 개별 히스토리가 있어 그 정비가 쉽지 않을 것이며, 지하경제 양성화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토론자들 또한 정부의 재정개혁에 대해 더 강도 높은 추진을 주문하였다. 이노근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의 과다함을 지적하였고, 비가역적인 재정확대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박범계 의원 역시 세입확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웅기 교수는 재량지출의 축소를 위해 과감한 지출조정이 필요하며, 현 정부의 공약가계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등이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정건전화에 대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이노근 의원 역시 Paygo 제도나 지방재정위기상황에 대한 대처제도 등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정부의 축제 예산이나 국제행사과 같은 선심성 지출에 대해서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끝으로 하연섭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략적 지출검토의 도입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예산의 배분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 예산심사도 현행과 같은 상향적 심사가 아닌 하향적 심사(top-down)로 바뀌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



3. 마무리

「2016년도 예산안 토론회」는 국회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방향에 대해 총론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토론자인 백용기 교수는 정부의 예산이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하연섭 교수는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하여 지출 구조조정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자인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30년 재정전망을 준비 중에 있으며, 현행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10년 단위 계획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김광목 예산분석실장은 농업, 중소기업, SOC 등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부터 구조조정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략적 지출 검토 제도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여·야 두 의원은 당의 심사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노근 의원은 새누리당의 2016년도 예산안 심사의 기본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등을 강조하였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6년도 예산이 민생살리기, 경제살리기, 재정살리기, 지방살리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예산분석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 연 번 | 날 짜 | 주 제 | 장 소 | 대 상 |
|-----|--------|---|-------|-------------------------------------|
| 1 | 2. 23. |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 | 국회의장실 | 국회의장 |
| 2 | 3. 23. | 국회 결산심사 강화방안(후속보고) | 국회의장실 | 국회의장 예결위원장 |
| 3 | 4. 1. |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 운영 개선방안 | 국회의장실 | 국회의장 |
| 4 | 4. 6 | 재정제도 개요 | 의원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의원연구단체) |
| 5 | 4. 7. | 제1차 국회의장 주재 위원장 연석회의 —결산심사 강화를 위한 국회 운영 개선방안 | 국회의장실 | 국회의장 및 위원장(18인) |
| 6 | 6. 16 | 안행위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 의원실 | 노웅래 의원 |
| 7 | 6. 30 |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주요내용 | 의원실 | 안민석 의원 |
| 8 | 7. 3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주요내용 | 의원실 | 최재천 의원 |
| 9 | 7. 13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주요내용 | 의원실 | 이언주 의원 |

[경제분석실 국회의원 대면보고 현황]

| 연번 | 날 짜 | 대면보고 내용 | 장소 | 대상 |
|----|-------------|--|-----|--------|
| 1 | 1. 26 | 연말정산 세법개정관련 | 의원실 | 정희수 의원 |
| 2 | 3. 4 | 조세체계 관련 | 의원실 | 노웅래 의원 |
| 3 | 5. 20 | 최근 경제·재정 상황 및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 의원실 | 김세연 의원 |
| 4 | 8. 5 | 세입여건과 2015년 세제개편 관련 면담 | 의원실 | 최재천 의원 |
| 5 | 8. 6 | 조세정보 조기공개를 위한 법제화 방안 | 의원실 | 정희수 의원 |
| 6 | 8. 25~8. 27 | 2015년 세법개정안 주요쟁점 | 의원실 | 최재천 의원 |
| 7 | 10. 21 | 경제 및 재정현안 보고/ 2016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 관련 보고 | 의장실 | 국회의장 |

[사업평가국 국회의원대면보고 현황]

| 연번 | 날짜 | 대면보고 내용 | 장소 | 대상 |
|----|-------|--------------------------|-----|--------|
| 1 | 5. 14 |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 | 의원실 | 김제남 의원 |
| 2 | 5. 14 |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 | 의원실 | 배덕광 의원 |
| 3 | 5. 15 |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 | 의원실 | 이정현 의원 |
| 4 | 5. 15 |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 | 의원실 | 하태경 의원 |
| 5 | 5. 15 |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관련 보고 | 의원실 | 전정희 의원 |
| 6 | 6. 15 | 동북아오일허브사업 현황 보고 | 의원실 | 김제남 의원 |

2. 정책 토론회 개최

가. 조세정책토론회: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5년 10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안’을 주제로 조세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제출한 2015년 세법개정안의 정책방향이 대내외 경제환경과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지 평가하고, 개정내용의 타당성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되었다.

개회식에서는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와 정희수 국회기획재정위원장의 축사가 전달되었다. 김동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성명재 홍익대 교수, 김유찬 홍익대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석하여 세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 발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기획재정부 문창용 세제실장은 “2015년 세법개정 주요내용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2015년 세법개정의 기본방향과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저성장세를 보이는 경제여건과 부진한 세수실적 등 현재의 재정여건을 설명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주요 개정안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증대세제, 소비 여건 개선을 위한 체크카드 등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을 설명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비과세 펀드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지원 신설 등의 취지를 소개하였다. 또한 민생안정 측면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및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액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 외 공평과세를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 확대, 세원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확대 및 다국적

기업이 제출하는 국제거래정보의 범위 확대 등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정부의 중장기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하였다. 이에 성장 동력의 확충·과세형평 제고·안정적 세입기반 확보·조세제도 합리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중장기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을 소개하면서 발제를 마무리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국회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세목별 정비방안 및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 발표하였다. 특히 현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은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이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라는 중장기 목표 달성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제도에 대해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개인의 저축·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활성화 측면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세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역시 미국의 금리인상 예고 등 최근의 국제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자칫 제도의 효력이 미약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과세합리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이라고 보았으나, 차량가액·배기량·업무주행비용 등 업무 관련성 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비용인정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끝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미흡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수효과는 예년에 비해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세계개편 방안 마련과 추가적인 세원조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세목 위주의 대안보다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세계개편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토론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소득격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청년고용증대세제 등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기업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서민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인 홍익대학교 성명재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편 범위는 크지 않으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세부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과세 부문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에 상한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다. 과거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는 담배에 대한 흡연 억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2014년과 같은 일시적인 세율인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세율인상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조세정책이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축소 등 보편과세에 더욱 치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이어 홍익대학교 김유찬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공평과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과세·감면의 혜택이 소득 상위계층이나 대기업에 치중된 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ISA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혜택이 자본의 이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다른 의견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세혜택을 받는 소득계층을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끝으로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에 더욱 치중하게 되면서 세수확충문제에 있어서는 미흡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이 설비투자지원보다 고용지원에 집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 세제지원책 역시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제도별로 활용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축소·조정 등 개선점을 마련하고, 서민층의 고위험 투자 증가 가능성 등 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조세정책 토론회: 「2015년 세법 개정안」토론회]



나. 통일정책 토론회: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

□ 개요

2015년 10월 19일,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2주년을 기념하여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에 개최된 “한반도 통일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준비 시나리오별 통일비용 추계결과를 발표하고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전 과정은 국회방송으로 녹화중계 되었으며, 본격적인 발제 및 토론에 앞서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 정의화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영상 축사가 있었다.

토론회는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홍일표 새누리당 국회의원,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조동호 이화여대교수,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하였다.

□ 발제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26년 한반도가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남북한 교류협력 수준에 따라 전망 및 추계된 북한지역의 소득수준과 통일비용을 제시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 남북한 교류협력 수준이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경우(시나리오 1) 2060년 북한지역 소득은 남한의 38%에 불과하지만, 식량, 의료 등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2) 북한지역의 출생률 상승, 건강상태 등이 개선됨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제고되어 2060년 북한의 소득수준은 남한의 5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으로 도로, 철도 등 SOC 분야를 포함한 경제적 투자 등 전면적 교류협력이 진행될 경우(시나리오 3)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은 남한지역의 66%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통일비용은 통일 후 북한지역의 소득수준을 남한지역의 66% 수준까지 성장시켜 통일에 따른 소득격차가 아닌 통일한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 수준에 수렴될 때까지 투입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다. 추계결과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시나리오 1) 2076년 북한지역 소득이 남한의 66%에 도달하고 이때까지 총 4,822조원의 통일비용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리

나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경우(시나리오 2) 남한소득의 66%에 도달하는 시점은 2065년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5년이 단축되며, 통일비용은 3,100조원으로 시나리오 1에 비해 1,722조원이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이 SOC를 포함하여 전면적 협력수준으로 확대될 경우(시나리오 3) 2060년 까지 총 2,316조원이 발생하여 시나리오 1보다 2,506조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남북한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SOC, 경제특구 공동개발 등을 포함하여 전면적 협력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3이 북한지역 소득수준을 가장 빠르게 증가시키고, 통일비용도 가장 적게 발생하는 이상적인 통일경로이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식량, 의료보건 등의 인도적 지원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토론

첫 번째 토론자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동한다는 측면에서 단지 통일비용의 경감만이 아닌, 최근 남북 관계의 변화와 맞물린 통일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지원이 소위 퍼주기에 그쳤다는 시각이 국민들 사이에 여전히 존재함을 언급하며, 아울러 인도적 대북지원이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통일비용의 경감 및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치권이 초당적인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정책과 입법을 통해 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독의 ‘동방정책’의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은 한 번의 역사적 결정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단계와 조치가 수반되는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가 통일시점을 앞당기고 통일 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능과 성격을 언급하였다. 매년 1조원 이상이 남북협력사업에 책정되어 있지만 2009년 이후 집행률이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현재로서는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남북교류협력의 확대가 통일비용의 궁극적 절감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 가운데 인도적 지원 시와 남한의

[통일정책 토론회: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정책과제]



전면적 투자 시의 격차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북한의 성장으로 인한 남북 간 경제력 격차의 수렴 속도가 다소 느리게 나타난 잠재적 원인 가운데 하나로서 북한 경제의 현실에 대한 국내의 통계자료가 과소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으며, 거창한 논의를 앞세우기보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통일의식 조사 설문결과를 소개하며 통일의 편익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만 실제 통일비용부담은 지기 싫어하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통일대박 실현을 위해서는 통일편익이 비용보다 크며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며, 대북지원이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투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의 경제 특구 및 개발구 정책과 연계한 남북 경험 활성화, 북한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국제관광특구 조성,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들의 마음 얻기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의원은 조선일보가 통일연구원 및 고려대 아세아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통일비용에 대한 추계 결과가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와 대체로 비슷함을 언급하며 경제적 교류와 인프라 투자, 인적 교류, 보건의료 및 농업분야 지원 등을 강화하면 통일비용이 줄고 통일혜택은 커진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등에서 나타난 통일비용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시각에 대해 언급하며, 단기에 비용이 집중되는 데 따른 부담으로 세대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한편 개성공단 및 기업 간 경제교류확대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모두 편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교류에 대해서는 입장의 차이가 존재함을 언급하였다.

다.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준기)는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2015년 10월 27일 오후 2시에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장기 저성장으로 인해 복지와 재정을 둘러싼 어려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방안들이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의 현실을 확인하고 개선과제를 모색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삼주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복지재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대응지방비 부담 확대에 따라 지방재정의 경직성이 가속화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하면서,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지방재정 발전에 또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민선 자치 2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밝히면서, 이번 토론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본격 접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이 당면한 도전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주민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김순은 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이 ‘복지사업 확대의 영향과 지방재정 개선과제’에 대해,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과 지속가능성 모색’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석진 지방재정정책관(행정자치부), 김성주 수석연구위원(지방행정연구원), 김현아 선임연구위원(조세재정연구원), 배인명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송상훈 연구실장(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 임승빈 교수(명지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복지사업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발표

발제를 맡은 조영철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은 “복지사업 확대의 영향과 지방재정 개선과제”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국가시책 복지사업의 확대에 의해 대응지방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반재원이 줄어들어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 SOC 투자가 감소하는 등 재정부담이 큰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국고보조율의 적정화, 자치구 재정조정제도 개선

과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가칭)사회복지교부세 신설에 대한 중장기 검토,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과 실험성을 고려한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 관련 사전 협의·조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과 지속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둘러싼 중앙·지방 간 갈등과 대립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제도가 중심축을 형성하고 조세제도가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를 구축하고, 재정의 지출권한, 관리·감독, 협의·조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재정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거시적 재정분권의 기초와 맥을 같이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장기적으로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재정역량의 범위, 즉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책토론회: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



□ 지정토론

김석진 지방재정정책관(행정자치부)은 현재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복지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보통교부세 복지수요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비 중 상향조정(25%→35%),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권고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가칭)사회복지교부세 신설보다는 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고보조를 상향조정, 증액교부세 부활 등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성주 수석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은 차등보조율 제도는 기초단체 간 재정형평화 효과가 미미하여 재정이 필요하며, 정부 간 재정관계 이론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이에 기반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보조율 조정절차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일본의 예를 참조하여 지방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중앙·지방 간 협의의 의무화 및 그 협의결과 이행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현아 선임연구원(조세재정연구원)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교부세의 신설이 보통교부세 복지수요 반영비율의 상향조정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경상비가 아닌 시설투자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채 활용을 통한 재정책임성 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시설투자의 지방채 활용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배인명 교수(서울여자대학교)은 복지재정 분담 문제와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역할을 원칙에 맞게 재정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재정부담의 정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 부담분에 대한 재정을 추계하고, 그 결과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규모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원조정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지방세 확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상훈 연구실장(경기연구원 공존사회연구실)은 복지서비스는 국가가 국민의 행복권을 보장하는 기본적 서비스이므로 국가의 일반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방의 복지 기능 확대를 반영하여 지방세 체계를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되, 지방교부세 재원 감소에 따른 지역간 재정력 격차 확대는 지방 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신설(“(가칭)지방재정공동고”)을 통해 지방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임승빈 교수(명지대학교)는 지역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넘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정부와 민간조직의 중간지대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또한 반관반민의 기금으로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지역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예산 절감 및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비롯하여 지원받는 사회적 기업의 숫자가 늘어날 경우 일자리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전문가 간담회 및 포럼 개최 현황

가. 전문가 간담회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학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수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하여 재정·조세 분야와 사업평가 분야의 현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외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강화하고 분석보고서 작성 및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처리에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예산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자 | 소속 |
|----|-------|----------------------------------|-----|-----------|
| 1 | 2. 27 |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경제의 파급효과 | 정대회 | KDI |
| 2 | 3. 13 | 주요국의 입법절차와 재정제도 -비용추계를 중심으로- | 강주영 | 제주대학교 |
| | | | 장철준 | 단국대학교 |
| | | | 최환용 | 한국법제연구원 |
| | | | 김도승 | 목포대학교 |
| 3 | 3. 16 | 복지지출 구조조정 | 이종천 | 승실대학교 |
| | | | 김미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4 | 3. 17 | 결산 분석 역량 강화: 분석기법 고도화 및 사례 중심 | 이종운 | 감사교육원 |
| 5 | 12. 1 | 포털사이트 검색기법 | 권혜진 | 건국대학교 |

[경제분석실 전문가 간담회]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자 | 소속 |
|----|--------|---|-------------|-------------|
| 1 | 1. 16 |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쟁점과 정비방안 | 박기백 | 서울시립대 |
| 2 | 2. 4 |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류덕현 | 중앙대 경제학과 |
| 3 | 2. 23 |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자원배분 국제비교 | 박승준 | 대구대 경제학과 |
| 4 | 3. 19 | 최근 물가동향과 전망 | 정대희 | KDI 거시경제연구원 |
| 5 | 3. 26 | 주요국 경제현황, 통화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 최호상 | 국제금융센터 |
| 6 | 4. 8 | 우리나라 국제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
| 7 | 4. 30 | 2015년 경제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 | 장정석 | 한국은행 |
| | | | 강준구 | LG경제연구원 |
| | | | 김창배 | 한국경제연구원 |
| 8 | 5. 1 | 2015년 경제전망 관련 전문가 간담회 | 김성태 | KDI |
| 9 | 6. 2 | 독일 연금제도의 현황과 동향 | 이용하 | 국민연금연구원 |
| 10 | 8. 25 | 전략적 지출검토 도입 방안 | 하연섭 | 연세대 행정학과 |
| 11 | 8. 27 |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 장정석 | 한은 조사국 |
| | | | 임 진 | 금융연구원 |
| | | | 김성태 | KDI 연구위원 |
| 12 | 9. 10 | 효율적 SOC투자방향 | 송준혁 | 한국외대 |
| 13 | 9. 11 |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 | 송인호 | KDI |
| 14 | 9. 11 | 전략적 지출점검제도 | 박노욱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15 | 9. 15 | 교육재정 평가와 정책과제 | 박정수 | 이화여대 |
| 16 | 9. 17 |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복지재정 규모와 구성 | 이 영 | 한양대 |
| 17 | 10. 6 | 중국 금융시장의 동향과 리스크 요인 점검 | 안유화 | 한국예탁결제원 |
| 18 | 10. 14 | 중국 경제리스크요인 진단 및 향후 전망 | 이치훈 | 국제금융센터 |
| 19 | 11. 17 | 독일의 지속가능성심사에 관한 연구 | 배건이 | 한국법제연구원 |
| 20 | 12. 4 | Global talent and cultural diversity: Finding solutions for an aging society | 신기욱 | 스탠퍼드대 |
| | | | Rennie Moon | 연세대 |
| 21 | 12. 15 | 2016년 경제 및 산업 전망 | 김성태 | KDI |
| | | | 조철 | 한국산업연구원 |

[사업평가국 전문가 간담회]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 | 소 속 |
|----|-------|----------------------------------|-----|-----------------|
| 1 | 1. 7 | 민생치안 경찰인력 운용 평가 | 임준태 | 동국대학교 |
| 2 | 1. 12 | 생태하천사업 평가 | 전동준 |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
| 3 | 1. 13 | 생태하천사업 평가 | 황순진 | 건국대학교 |
| 4 | 1. 28 | 불량식품 대책사업 평가 | 김정년 | 한국식품산업협회 |
| 5 | 2. 26 | 전월세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 안정 제고방안 | 박미선 | 국토연구원 |
| 6 | 3. 2 | 경찰인력운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민생치안을 중심으로 | 최천근 | 한성대학교 |
| 7 | 3. 17 |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분석 | 김진영 | 건국대학교 |
| 8 | 3. 19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평가 | 정형선 | 연세대학교 |
| 9 | 4. 1 | 중소기업 인력 지원사업 분석 | 이규용 | 한국노동연구원 |
| 10 | 4. 9 |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전인우 | 중소기업연구원 |
| 11 | 4. 10 |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 분석 | 이병희 | 한국노동연구원 |
| 12 | 4. 10 |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개선방안 | 류기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 13 | 4. 16 | 자영업 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박재성 | 중소기업연구원 |
| 14 | 4. 17 |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 서영인 | 한국교육개발원 |
| 15 | 4. 24 |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의 주요쟁점과 개선방안 | 이영주 | 산업연구원 |
| 16 | 4. 28 | 고리1호기 계속운전의 경제성 분석 | 정범진 | 경희대학교 |
| | | | 이창훈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
| | | | 이만기 | 원자력연구원 |
| 17 | 5. 6 | 정부 기금 여유자금 운용 프로세스 | 김주훈 | FN GUIDE |
| | | | 김태용 | |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 | 소 속 |
|----|--------|-----------------------|-----|-----------|
| 18 | 5. 7 | 항만사업 평가 | 양창호 | 인천대학교 |
| | | | 남기찬 | 해양대학교 |
| | | | 우수한 | 중앙대학교 |
| | | | 길광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19 | 5. 12 | 기금자산배분계획 수립절차 평가 | 김태호 | 모닝스타투자자문 |
| | | | 정승혜 | |
| | | | 최복룡 | |
| 20 | 7. 3 | 우리나라 정책금융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신진영 | 연세대학교 |
| 21 | 7. 16 | 도로·철도 공기업 투자사업 평가 | 정성봉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22 | 8. 5 |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 | 선우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23 | 8. 10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평가 | 김준영 | 한국고용정보원 |
| 24 | 8. 28 | 농업보조사업 평가 | 박진도 | 충남대학교 |
| | | | 양승룡 | 고려대학교 |
| | | | 윤석원 | 중앙대학교 |
| 25 | 11. 13 | 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경험성 평가 | 허순임 | 서울시립대학교 |
| | | | 김대환 | 동아대학교 |
| 26 | 11. 27 | 청년해외진출사업 평가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
| 27 | 11. 30 | 2016년 사업계획 관련 전문가 간담회 | 곽채기 | 동국대학교 |
| | | | 김완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 | | 박개성 | 엘리오앤컴퍼니 |
| | | | 박진 | KDI |
| 28 | 12. 10 | 국방예산 쟁점과 과제 | 백재욱 | 한국국방연구원 |
| 29 | 12. 21 | 경찰인력운용 평가 | 최천근 | 한성대학교 |
| 30 | 12. 28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사업 평가 | 박성재 | 한국노동연구원 |

나. 포럼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각 실·국별 포럼 개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예산분석포럼]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 및 토론 |
|----|---------------|-------------------------------|-----------|
| 1 | 5. 20 ~ 6. 12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 심의회 | 예산분석실 전직원 |
| 2 | 6. 19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조치결과 보고서 심의회 | " |
| 3 | 6. 24 ~ 25 |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보고서 심의회 | " |
| 4 | 6. 29 |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심의회 | " |
| 5 | 9. 14 ~ 25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심의회(1차) | " |
| 6 | 9. 29 ~ 10. 2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심의회(2차) | " |
| 7 | 10. 6 ~ 8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심의회(3차) | " |
| 8 | 10. 16, 21 | 2016년도 예산안 성인지, 거시·총량 보고서 심의회 | " |

[사업평가포럼]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 및 토론 |
|----|-------|----------------------|-------------|
| 1 | 1. 23 |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 안옥진 |
| 2 | 2. 6 | 여성고용촉진사업 평가 | 김영옥 장지연 |
| 3 | 5. 18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 사업평가국 전직원 |
| 4 | 5. 28 |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 공공기관평가과 전직원 |
| 5 | 8. 1 |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 | 민병찬 |
| 6 | 7. 31 | 부문별 복지 지출 수준 국제비교 평가 | 한정수 |
| 7 | 8. 3 | 항만사업 평가 | 안태훈 |

| 연번 | 개최일 | 주 제 | 발표 및 토론 |
|----|--------|---------------------------|----------------|
| 8 | 8. 10 | 생태하천 사업 평가 | 홍종호 황순진 |
| 9 | 8. 11 | 주거안정 사업 평가 | 한노덕 |
| 10 | 8. 25 |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 심지현 |
| 11 | 9. 17 | 정부 성과계획 평가 | 사업평가국 전직원 |
| 12 | 9. 24 |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공공기관평가과 전직원 |
| 13 | 9. 30 | 취약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평가 | 이병희 전병유 |
| 14 | 10. 6 | 농업보조 사업 평가 | 조윤희 |
| 15 | 10. 7 |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 변용찬 윤상용 |
| 16 | 10. 12 | 국가 R&D 정책·재정지원 평가 | 임길환 |
| 17 | 10. 21 | 자영업자 지원정책 평가 | 한정수 |
| 18 | 10. 28 | 중소기업지원 사업 평가 | 정유훈 |
| 19 | 12. 2 |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현안과 개선과제 | 한재명 김성수 |

4. 정보화 사업

국회예산정책처 기획협력담당관실은 의정지원활동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처 고유업무의 정보화, 정보인프라의 안정적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에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업무의 급증에 대비하여 전년말 수립한 업무 재설계 및 정보화계획(ISP)을 바탕으로,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1차 사업을 추진하였고, 경제재정정보시스템에 DB화한 통계항목(19,269항목)을 검증하고 2014~2015년 발표자료(19,030항목)를 수집·갱신하였으며 2,092개의 신규 통계항목을 추가 DB화하였다.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1차 사업은 기존 추계사례를 조문별 재정수반 요인으로 분리, DB화하고 관련조문의 기존 추계사례를 추천하여 추계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며 또한, 법조문과 재정수반요인별 추계서를 연계하여 향후 재정총량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비용추계시스템 고도화 1차 사업

개정된 국회법 시행(2015.3.29.)으로 추계업무가 폭증하였으며, ICT를 활용한 효율화 방안으로 기존 의안비용추계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방안이 수립, 추계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선, 법률안 내 조문단위의 재정수반요인을 분리하여 DB화하고 기존 추계서를 요인별로 분리하여 추계결과를 DB화하였으며, 현행 법조문과도 연계하여 추계서 작성시 법률안(재정수반요인별) ↔ 추계결과 ↔ 현행법률을 동시에 제시, 필수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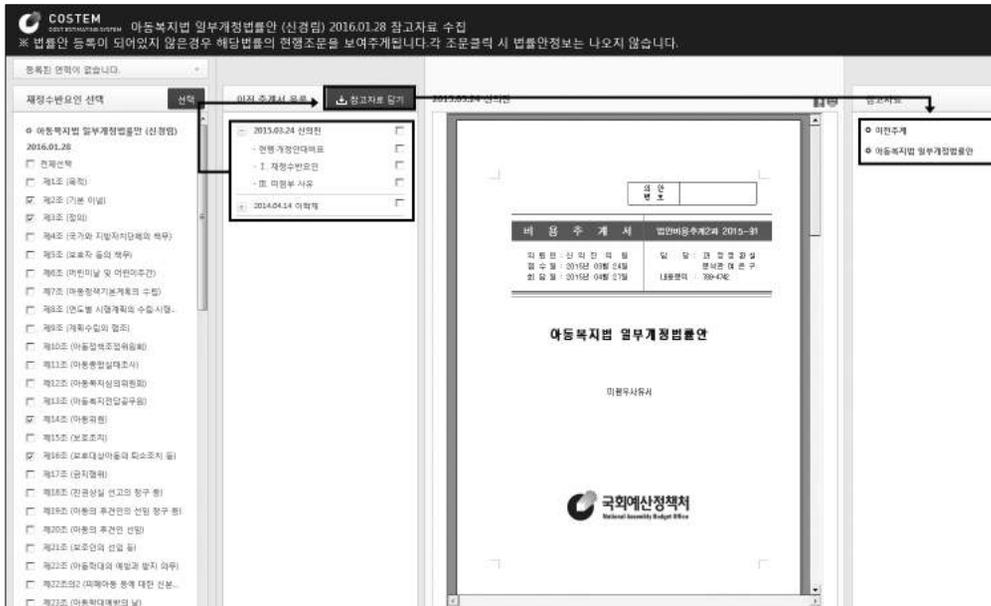
또한 위와 같은 추계업무 자료지원 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법률안 및 추계서 등록·관리 기능을 개발하였으며, 법률 제·개정에 대비하여 추계결과 조문이력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지속적인 자료 갱신체계를 구비하였다.

| | |
|------|---|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추계사례(19대 2,000여건) 및 요구 법률안 DB구축관리 ○ 재정수반요인 기반 요구의안과 추계결과 연계 관리 체계 구축 ○ 추계결과 자동생성 기능(인력, 조직신설) 구축 ○ DB화 자료 통합 조회 및 추계서 작성 지원을 위한 기능 개발 |
| 사업기간 | 6개월(2015. 6.~12.) |

[비용추계 고도화 1차 - 법률검색 조문별 추계서 조회]



[비용추계 고도화 1차 - 추계지원 화면]



[비용추계 고도화 1차 - 자동산출 화면]

소요비용 자동산출 (상세)

기본 | 추가기간 | 명상표

시제 | * 시작년도: 2018 | * 기간(년): 5

☑ 없음 | ☐ CPI | ☐ 명목임금 | ☐ 공무원보수

신출입액 추가

공무원 연건비 | 공공기관 연건비 | 위임해 운영비

임차비 | 기대발육

공무원 연건비 (#1) [상세]

- 대상: 전체
- 연건비: 362,751 천원
- 기본경비: 376,866 천원

위임해 운영비 (#2) [상세]

- 광석수당: 216 천원
- 심사수당: 1,080 천원
- 사전검토비: 1,440 천원

임차비 (#3) [상세]

- 임차비: 2,980 천원

소요비용 자동산출 결과

공무원 연건비 (#1)

대상: 전체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 연건비 | 362,751 | 362,751 | 362,751 | 362,751 | 362,751 | 1,813,755 |
| 기본경비 | 376,866 | 376,866 | 376,866 | 376,866 | 376,866 | 1,881,830 |
| 합계 | 739,617 | 739,617 | 739,617 | 739,617 | 739,617 | 3,698,585 |

위임해 운영비 (#2)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 광석수당 | 216 | 216 | 216 | 216 | 216 | 1,080 |
| 심사수당 | 1,080 | 1,080 | 1,080 | 1,080 | 1,080 | 5,400 |
| 사전검토비 | 1,440 | 1,440 | 1,440 | 1,440 | 1,440 | 7,200 |
| 합계 | 2,736 | 2,736 | 2,736 | 2,736 | 2,736 | 13,680 |

임차비 (#3)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합계 |
|-----|-------|-------|-------|-------|-------|--------|
| 임차비 | 2,980 | 2,980 | 2,980 | 2,980 | 2,980 | 14,900 |

자동산출 | Reset | Excel 다운로드

□ NABO-EFIS DB 및 홈페이지 자료 갱신

2014년 구축한 19만 여건의 데이터를 원출처와 비교하여 변경된 자료를 재입력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향상시켰고, Open-API로 변경된 통계항목은 수집 방식을 변경하여 데이터 관리의 편의와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또한, 추가로 필요한 통계항목을 선정하여 데이터를 입수, DB화하여 신속한 자료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제재정통계란의 자료를 수집·갱신하여 최신자료(총 216 항목)를 제공하도록 추진하였다.

| | |
|------|--|
| 사업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EFIS 등록 자료 검증 (19,269항목) ○ 신규 발표자료 수집·갱신(19,030항목), 신규 추가항목 입수·등록(2,092항목) ○ 홈페이지 및 모바일 홈페이지 경제재정통계란 갱신 |
| 사업기간 | 8개월(2015. 5.~12.) |

□ 향후 계획

2016년 기획협력담당관실은 비용추계 업무효율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결과를 토대로 지원 정보시스템 고도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도화 2단계에서는 재정소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의 DB화 및 기존 추계서 DB화(17~18대, 500여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개편된 국문 홈페이지에 맞춰 모바일 홈페이지의 기능과 화면구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5. 대외협력

가. 국제교류

2015년에는 미얀마 및 알제리 등 외국의회 의원단, 경제부처 공무원 방문단 등이 총 6차례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한국의 재정제도,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 국회예산과정에서 의회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 미얀마 KSP 정책실무자연수단

1월 21일, 응 틴 마웅 키(U Tin Maung Kyu) 국가기획경제개발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얀마 KSP 정책실무자연수단 5인이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이후 사업평가 및 정책평가기법에 대해 심층적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알제리 재무부 방문단

2월 25일, 시디 모하마드 펠레인(Sidi Mohamed Ferhane) 재무부 거시경제관측국 총국장을 단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을 예방하였다. 대표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과 역할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거시 계량 모형 분석을 통한 재정 및 조세정책의 효과분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 월드뱅크 전문가 방문

3월 6일, 토마스 오브라이언(Thomas O'Brien)월드뱅크 팀장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분석관 및 실무직원들과 국회예산정책처의 성과 및 영향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체코 의회 대표단

6월 3일, 체코 안 바르토섹(H.E. Jan Bartošek) 하원부의장 일행 13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및 조직구성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이후 예산규율, 국가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9월 21일,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 리우 쉰원(刘修文) 부주임 등 6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여 처장과 환담을 나누고, 세미나실로 자리를 옮겨 최근 조세개혁 및 부동산 세제 개편과정과 성과, 중장기 경제전망에 대한 양국 간 비교연구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중국 전인대 예산공작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정례 교류의 일환으로서 의회재정 전문기관의 교류를 통한 양국 간 이해증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였다.



□ 태국 의회 대표단

10월 8일, 태국의회의 쉐라차이 리양분렛차이(Surachai Liengboonlertchai)부의장 일행 14인이 국회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 및 기능, 예산안 및 결산 분석 등과 관련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에 대해 듣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인도네시아 재무부 대표단

12월 4일, 아리프 위바와(Arif Wibawa) 재무부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대표단 6인이 예산정책처를 방문하였다. 방문단은 국회예산정책처 조직과 기능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한국의 연금제도에 대한 심층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나. 제7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기관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

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양일간 김준기 처장을 단장으로 오스트리아 의회(빈 소재)에서 열린 「제7회 OECD 회원국 의회예산처 및 독립재정기관 회의(The 7th Meeting of OECD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회의 의장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30여개국의 OECD 회원국 대표단과 IMF,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 대표단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대표단은 회의 참석을 통해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결과, 성과예산제도와 의회의 심사권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공유를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를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우리의 사례에 대해 소개하였다.

□ 첫째 날

OECD 회의의 첫날, 첫 번째 세션은 신생 독립재정기구에 대한 소개로 시작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는 각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그 연장선에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닌 독립재정기관을 설립하려는 노력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독립재정기관 수는 그 이전 기간의 세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독립재정기구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각 신생기관의 질적인 성장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보다 기관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해나갈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유지해야 나갈지 등에 대해서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준기 처장은 의회 예산처가 어떻게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분석 방법론의 과학성, 인적 구성의 전문화, 상급자(senior management)의 내부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의 강화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정치적 이해집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핵심역량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에 대한 모두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해 참가국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두 번째 세션은 독립재정기관에 대한 외부평가였다. 2014년 피평가대상으로 오스트리아와 영국이 선정되었으며, 평가자는 전직 의회예산처 멤버들((Kevin Page, 전직 캐나다 의회예산처장)이 담당하였다. 평가 결과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 신랄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스스로에 대한



[OECD 회의에서 발표하는 김준기 처장]

평가과정들이 독립재정기관의 독립성과 책무성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 견제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반추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했다.

마지막 의제로는 성과주의 예산의 성과와 향후 과제가 다루어졌다. 캐나다 의회예산처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으로의 환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과주의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었다.

□ 둘째 날

둘째 날 첫 세션의 의제는 정보공유를 둘러싼 의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였다. 정보공유를 둘러싼 부처와의 갈등은 전 세계 모든 독립재정기관이 공통으로 직면한 어려움이다. 그 갈등관계는 독립재정기관이 가진 본연의 책무성(accountability)에서 비롯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학관계가 집약돼서 정보문제로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다. 각국의 기관들이 부처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를 위해 부처와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교류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등은 각 기관들의 관심사였다. 김준기 처장은 ‘정보비대칭 하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가?(Legislative Check and Balances under Information Asymmetry)’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발표에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에 대한 법적 절차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독기능에서 정책 조안자로서의 협의와 조정기능 중심으로 의회의 기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십여년 간의 경험과 노하우에서 비롯된 제안들은 회의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참가국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국제통계요구권 추진과정에서의 난관과 극복과정, 이후의 성과와 교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6.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7조 및 「예산정책자문위원회내규」에 의거 예산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박재완 위원장(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등 총 19인의 제6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총 2회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결산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시작으로, ‘2015년도 업무실적 평가 및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자문 등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요 연구분석 과제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2015년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개최 현황]

| 회의 일자 | 회의 안건 |
|------------------------|--|
| 제1차 회의 2015. 5. 2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근 경제 동향 및 2015년 경제 전망 ○ 2015년 세입여건과 전망 ○ 2015년도 업무 기본방향 및 상반기 정기보고서 계획 ○ 2015년도 사업평가(심층평가) 계획 |
| 제2차 회의 2015. 12. 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도 업무실적 평가 및 2016년도 업무계획 |

[제6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가나다 순)

| | 성명 | 현 직위 및 경력 | 비고 |
|----|-----|--|-----|
| 1 | 박재완 |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전)기획재정부장관 | 위원장 |
| 2 | 구희권 |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 (전)국회사무처 사무차장 | 위원 |
| 3 | 국경복 |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전)국회예산정책처장 | " |
| 4 | 김덕중 | 중앙대 석좌교수 (전)국세청장 | " |
| 5 | 김원식 |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 (전)한국재정학회장 | " |
| 6 | 김인철 | 한국외대 총장 (전)감사원 감사위원 | " |
| 7 | 김태일 | 고려대 정경학부 교수 (전)좋은예산센터 소장 | " |
| 8 | 김호원 | 부산대 산학협력단 교수 (전)특허청장 | " |
| 9 | 남윤호 | 중앙일보 뉴스룸 국장 (전)중앙일보 편집국 경제선임기자 | " |
| 10 | 박진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 |
| 11 | 신성환 | 한국금융연구원장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 |
| 12 | 오재일 |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한국지방자치학회장 | " |
| 13 | 원윤희 | 서울시립대 총장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 |
| 14 | 이대식 |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 | " |
| 15 | 이용걸 | 세명대 총장 (전)방위사업청장 | " |
| 16 | 장지인 | 한국회계기준원장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 " |
| 17 | 전성빈 |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전)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 의장 | " |
| 18 | 최종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공기업학회장 | " |
| 19 | 하연섭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전)교육인적자원부 장관정책보좌관 | " |

임기 : 2년(2015. 4. 29~2017. 4. 28)

[제5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가나다 순)

| | 성명 | 현 소속 및 직위 | 비고 |
|----|-----|--------------------------------------|-----|
| 1 | 김동건 |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철도문화재단 초대이사장 | 위원장 |
| 2 | 공동성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 위원 |
| 3 | 김문수 | (전)국세청 차장 (전)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장 | " |
| 4 | 김성태 | (전)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 " |
| 5 |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전)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 " |
| 6 | 김태윤 | 한양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한국규제학회 회장 | " |
| 7 | 박완규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 " |
| 8 | 백웅기 |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전)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 " |
| 9 | 염재호 | 고려대학교 행정대외부총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 " |
| 10 | 이공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책학부장 | " |
| 11 | 이인실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전)통계청장 | " |
| 12 | 이혜경 |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서울시 복지재단 이사장 | " |
| 13 | 임인규 | 국회입법지원위원 (전)국회사무처 사무차장 | " |
| 14 | 정진용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입법차장 | " |
| 15 | 주영섭 | (전)관세청장 (전)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 |
| 16 | 주영진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조빙교수 (전)국회예산정책처장 | " |
| 17 | 최종원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공기업학회 부회장 | " |
| 18 | 홍은표 | (전)OECD 통계국 비즈니스 마이크로 UNIT 실장 | " |
| 19 | 황윤원 |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전)한국행정학회 회장 | " |

임기 : 2년(2013. 4. 29~2015. 4. 28)

7.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발간

「예산정책연구」는 예산·결산·기금 분석, 경제 및 조세·재정정책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과 관련된 이론 및 정책논문을 수록하는 재정전문학술지로, 2012년 5월에 창간하여 연 2회(5월, 11월) 발간된다.

제4권 제1호에는 백웅기 교수(상명대)의 “거버넌스와 경제성장”을 포함하여 재정정책,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연구,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등에 관한 논문 총 7편을, 제4권 제2호에는 김용하 교수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국민연금의 형평성 분석, 한·미 세대 간 경제의 비교연구 등 경제·재정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다양한 학술적·정책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 총 7편을 수록하였다.



[제4권 제1호 수록논문]

| 수록 논문 | 저자 | 소속 및 직위 |
|-----------------------------------|-----|----------------|
| 거버넌스와 경제성장 | 백웅기 |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
| 거버넌스와 재정성과 | 류덕현 |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
| 장기 재정전망과 지속가능성 검토 | 이강구 | NABO 경제분석관 |
| 국제비교지수를 활용한 한국의 복지지출 수준 평가 | 진익 | NABO 경제사업평가과장 |
| 지방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 박지현 |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 |
| 가업상속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한 연구 | 심충진 | 건국대 경영대학 교수 |
| 자원순환형사회 전환의 정책과제: 일본사례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서세욱 | NABO 산업예산분석과장 |

[제4권 제2호 수록논문]

| 수록 논문 | 저자 | 소속 및 직위 |
|--|-----|----------------------|
| 공적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 김용하 |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
| 국민연금의 세대 내·세대 간 형평성 분석과 개혁 방향 | 김태일 |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 임병인 |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
| | 정지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 한국의 1980년대 긴축 재정정책 연구 | 황성현 |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
| 한·미 세대 간 경제의 비교연구: 국민이전계정(NTA)을 이용한 접근 | 황남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 법정 복지지출 결정과정 사례분석과 PAYGO 규칙의 적용 탐색 | 박인화 | 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 이후 부처자율성 제고에 대한 실증적 분석 | 최종하 | 고려대 행정학 박사 |
| | 양다승 | 고려대 행정학 박사과정 |

8. 교육훈련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교육훈련 지침」을 2011년 6월 1일 자로 제정한 이후 예산정책처에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들이 국회공무원으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2015년도에는 분석관 및 평가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량분석에 대한 이해와 응용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초청특강, 핵심역량강화특강 외에도 의원보좌직원을 대상으로 NABO 재정아카데미를 실시하였다.

[교육훈련 현황]

| 연번 | 교육훈련 | 교육기간 | 교육인원 | 교육이수시간 |
|----|-------------------|---|------|--------|
| 1 | 2015년도 신입자 기본교육 | 1. 30/4. 3 | 14 | 3 |
| 2 | 계량분석에 대한 이해와 응용교육 | 2. 2~2. 16 | 41 | 21 |
| 3 | 복무 및 회계관련 법규교육 | 1. 28 | 21 | 1.5 |
| 4 | NABO 재정아카데미 | 6. 24~6. 25/ 8. 19~8. 20/ 10. 15~10. 16 | 94 | 10 |

[전문가 특강/핵심역량강화특강 현황]

| 연번 | 일시 | 강의주제 | 초빙강사 |
|----|-------|----------------|---------------------------------|
| 1 | 1. 27 | 한국경제와 재정개혁 | 박재완 성균관대학교 교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
| 2 | 2. 3 | 준실함과 영향분석이론 | 로렌스 모어 미시간대학교 명예교수 |
| 3 | 3. 23 | 예산정책처 위대함의 DNA | 배철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교수 |
| 4 | 5. 18 | 트렌드코리아 2015 |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
| 5 | 7. 3 | 대륙과바다, 역사적 접근 | 주경철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
| 6 | 9. 24 | 전환기와 우리 | 박형준 국회사무총장 |

□ 제1회 핵심역량강화특강

1월 27일,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교수(전기회계정부 장관)을 초빙하여 “한국경제와 재정 개혁”이라는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최근의 경제동향과 향후 전망,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박재완 교수는



정부 수지, 국가 부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 우리나라 경제좌표에 대해 설명하면서, 세계표준에 따른 획기적인 규제개혁, 서비스업 개방과 생산성 향상, ‘일하는 복지’와 고용유연성 제고 등 개혁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2015년도 해외재정전문가 초청 강연

2월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로렌스 모어(Lawrence B. Mohr) 미시간대학교 명예교수를 초빙하여 “준실험과 영향분석이론(Quasi-experiments and the Theory of Impact Analysis)”이라는 주제로 2015년도 해외재정



전문가 초청강연을 실시하였다. 로렌스 모어 교수는 실험적·준실험적·상관관계적 설계 등 각 사업평가 유형의 특징 및 차이점에 대해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설명하고, 이어서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제2회 핵심역량강화특강

3월 23일, 서울대학교 배철현 교수를 초빙하여 ‘예산정책처 위대함의 DNA’라는 주제로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배철현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연습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바른 길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난 국회예산정책처의 걸어온 역사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제3회 핵심역량강화특강

5월 18일,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를 초빙하여, “트렌드 코리아 2015”라는 주제로 2015년도 제3차 핵심역량강화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우리나라 소비트렌드 전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예산 및 경제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전문가 초청 특강

7월 3일, 서울대학교 주경철 교수를 초빙하여, “대륙과 바다, 역사적 접근”라는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 특강은 소통과 교류라는 관점에서 세계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대륙문명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탈피하여 바다에서 형성된 근대의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 전문가 초청 특강

9월 24일, 박형준 국회의사무총장을 초빙하여, “전환기와 우리”라는 주제로 2015년도 마지막 전문가 초청특강을 실시하였다. 이번특강을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한국형 발전모델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나눔과 공유, 공감의 미덕을 추구할 수 있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9. 직원연구모임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은 「국회예산정책처 직원연구모임의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구모임 구성원들이 관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의정지원조직으로서의 생산성 향상과 구성원간의 유대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7개 모임이 등록하여 활동하였다.

[2015년 직원연구모임 현황]

| 연번 | 연구모임명 | 인원 (현원) | 대표자 | 소속 |
|----|----------------|------------|-----|---------|
| 1 | 일본 경제·문화 연구회 | 12인 | 서세욱 | 산업예산분석과 |
| 2 | 문화연구회 | 23인 | 윤광식 | 총무담당관실 |
| 3 | NABO LOHAS 연구회 | 10인 | 정문종 | 사회사업평가과 |
| 4 | 독일경제연구모임 | 11인 | 박용주 | 경제분석실장실 |
| 5 | 계량경제연구회 | 14인 | 유승선 | 거시경제분석과 |
| 6 | 예산정책현안연구회 | 11인 | 문종열 | 사회예산분석과 |
| 7 | 조세 연구회 | 14인 | 신항진 | 세제분석과 |

10. 연구용역

2015년 중 발주한 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연구용역 결과는 예산안 및 결산 분석, 경제정책 및 경제전망, 사업평가 등 주요 분석보고서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정보화 사업 등에 활용하였다.

[연구용역과제 현황]

| | 연번 | 연구용역과제 | 수행자 | 소속 |
|------------|----|--|-----|----------------|
| 예 산 분석실 | 1 | 국회예산정책처의 예·결산 심사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 허성욱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2 | 전문성 기반의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발전과제 | 성만석 | 엘리오 엔컴퍼니 |
| | 3 | 최근 세수부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춘석 | 한국리서치 |
| | 4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 재정추계 모형 연구 | 권순만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5 | 복지재정 장기 전망1 | 강인수 | 젠솔소프트 |
| | 6 | R&D 예산의 집행실태와 투자우선순위 분석 | 강장석 | 한국의회학회 |
| | 7 | 기술료 수입의 배분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영환 | 한국조세 연구포럼 |
| | 8 | 의료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실태 및 관리 개선방안 연구 | 김형선 | 한미회계법인 |
| | 9 | 국방 연구개발(R&D) 실태 및 개선방안: 타 분야 국가연구개발(R&D) 사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하태정 |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

| | 연번 | 연구용역과제 | 수행자 | 소속 |
|------------|------------|---|--------|----------------|
| 경 제 분석실 | 10 | 동태확률모형(DSGE)을 이용한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 김선빈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 | 11 | 일본의 20년 장기침체(디플레이션)의 특성과 대응정책에 관한 연구 | 정유신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 | 12 | 최근 독일 경제부흥의 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김동순 | 글로벌 입법정책연구원 |
| | 13 | 경제전망의 예측력 강화를 위한 베이지언 DSGE 모형 구축 | 조장욱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 | 14 | OECD국가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분석과 시사점 | 박승준 |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
| | 15 | 재정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개발 | 홍성철 | 다산경제연구원 |
| | 16 |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이용한 조세특례제도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 지해명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17 | 조세지출항목의 성과평가지표 개발 | 전병욱 | 한국재정학회 |
| | 18 | 개인소득세 부문 비과세/감면제도의 효과 분석을 위한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 성명재 | 한국재정학회 |
| | 19 | 기업데이터를 활용한 법인세수 전망모형 연구 | 고종권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 20 | 부가가치세제 합리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방안에 관한 연구 | 전승훈 | 한국재정학회 |
| 21 | 한국의 재정과 복지 | 이우진 | 한국재정학회 | |

| | 연번 | 연구용역과제 | 수행자 | 소속 |
|------------|----|------------------------------------|-----|----------------|
| 사 업 평가국 | 22 | 근로빈곤층 취업지원사업 정책수단별 성과 비교 | 김주찬 |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 | 23 |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자영업 규모에 관한 연구 | 류덕현 | 한국재정학회 |
| | 24 | 주거안정 정책 관련 실태 조사 | 이용만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 | 25 | 정부기금 여유자금 운용계획의 적절성 분석 | 김현수 | 에프엔가이드 |
| | 26 | OECD 국가들의 부문별 공공사회복지지 출 결정요인 분석 | 신동면 |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
| | 27 |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 | 최충익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 28 | 혁신형 중소기업 정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한상범 | 한국금융학회 |
| | 29 | 농업보조금 관련 재정사업과 조세지출 연계 방안 | 노용환 | 다산경제연구원 |
| | 30 |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효과 분석 | 김진영 | 한국재정학회 |
| | 31 | 지역경찰인력 적정 증원규모 산출에 관한 연구 | 최천근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 | 32 | 국가와 지방의 복지지출 실태와 전망 | 이상호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 33 | 공공기관 구분회계 제도의 적정성 평가 | 홍철규 | 한국관리회계학회 |
| | 34 | 금융공공기관 정책금융사업 평가지표 개발 | 조경호 | 서울행정학회 |

11. 사회봉사활동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1004 지역사회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 4월부터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기획관리관실, 예산 분석실, 경제분석실, 사업평가국 등 실·국별로 사회복지시설 각 1곳을 선정하여 매월 평균 2회 가량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47회 참가하였다.



[사회봉사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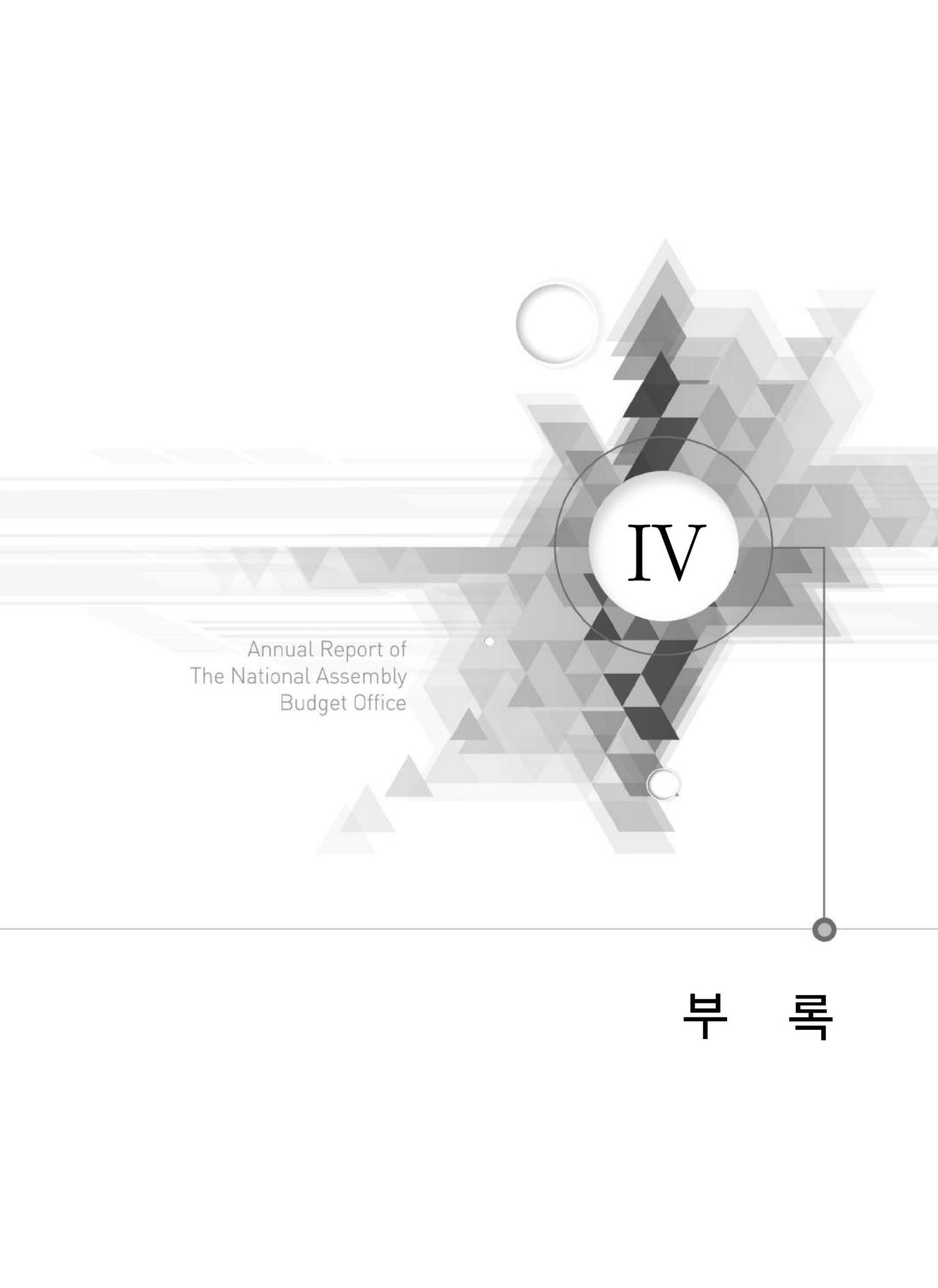
| | 사회봉사기관 | 참석인원 | 봉사 내용 |
|-------|-----------|-------|---------------|
| 기획관리관 | 마포종합사회복지관 | 4인 내외 | 배식, 설거지, 청소 등 |

12. 2015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 수행된 의정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향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길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2015년도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2015년 12월 21일 까지, 조사대상은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으로 회신율은 84.3%(300명 중 253명)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5년도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

| 구 분 | 활용률(%) | 만족도(점) |
|-------------------------------|--------|-------------|
| 국회예산정책처 의정활동지원 전반적 서비스 | — | 65.4 |
| 분석·평가 보고서 | 97.1 | 64.2 |
| 법안비용추계 | 99.2 | 62.6 |
| 조사·분석 회답 | 98.0 | 62.8 |
| 토론회 및 세미나 | 82.6 | 61.0 |
| 의원 대면보고 | 76.6 | 56.7 |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 91.7 | 57.4 |
| E-mailing 서비스 | 88.9 | 61.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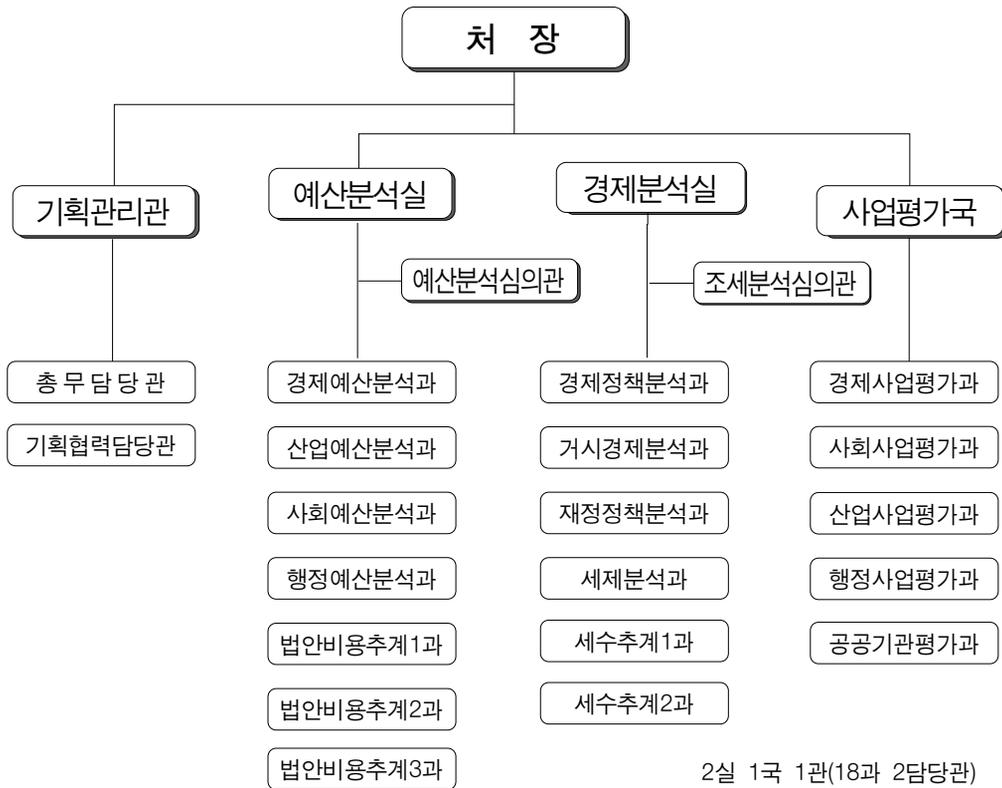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V

부
록

1. 조직 및 예산

가. 조직



(2015. 12. 31. 기준, 단위: 인)

| | 정원 | 현원 | 과부족 |
|-------|------------|------------|------------|
| 처장실 | 3 | 3 | - |
| 기획관리관 | 20 | 19 | △1 |
| 예산분석실 | 51 | 44 | △7 |
| 경제분석실 | 34 | 30 | △4 |
| 사업평가국 | 30 | 28 | △2 |
| 합계 | 138 | 124 | △14 |

※ 박사 39인, 입법고시 30인, 공인회계사 5인, 변호사 2인 등

나. 예산

2015년도 예산(현액기준)은 총 153억 3,200만원으로, 성질별로는 인건비 93억 6,200만원, 기본경비 19억 7,700만원, 주요사업비 3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본경비는 행정실무원 및 자료분석보조요원 운영, 교육훈련, 전산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비는 국가재정분석 및 법안비용추계, 경제분석 및 세수추계, 국가주요사업 및 공공기관 평가, 예산정책처 정보화 등에 필요한 경비가 편성되었다.

[2015년도 예산 집행 현황]

(2015.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 | 예산현액 | 집행액 | 잔액 |
|---------------|--------|--------|-----|
| 인건비 | 9,362 | 9,117 | 245 |
| 기본경비 | 1,977 | 1,842 | 135 |
| 주요사업비 | 3,993 | 3,765 | 228 |
| 기획관리및운영지원 | 597 | 569 | 28 |
| 국가재정분석및법안비용추계 | 1,153 | 1,050 | 103 |
| 장기경제분석체제구축 | 894 | 875 | 19 |
| 국가주요사업및공공기관평가 | 646 | 603 | 43 |
| 예산정책처정보화 | 703 | 668 | 35 |
| 합계 | 15,332 | 14,724 | 608 |

2. 연혁

1994. 8. 23. 국회사무처에 법제예산실 신설
2000. 1. 1. 법제예산실을 법제실과 예산정책국으로 분리·개편
2003. 6. 12.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예산결산지원기구의 설립방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2003. 7. 1. 「국회예산정책처법안」 본회의 의결
2003. 7. 3. 국회예산정책처설립준비기획단 구성
2003. 7. 18. 「국회예산정책처법」 공포
2003. 9. 15. 국회예산정책처실무준비팀 구성
2003. 9. 19.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구성
- 2003.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국회예산정책처법」 시행)
2003. 10. 20. 제1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최 광 임명 (~2004. 11. 18.)
2003. 10. 28.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정
2003. 12. 23. 청사 입주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빌딩 17~19층)
2004. 3. 3. 국회예산정책처 개청식
2005. 6. 2. 제2대 국회예산정책처장 배철호 임명 (~2008. 7. 14.)
2005. 11. 4. 청사 이전 (여의도 서울증권 빌딩 10~12, 14층)
2006. 12. 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08. 1. 18. 청사 이전 (국회의정관 4~5층)
2008. 9. 1. 제3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신해룡 임명 (~2011. 1. 21.)
2009. 4. 2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0. 4. 27.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1. 3. 4. 제4대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임명 (~2013. 2. 27.)
2011. 8. 26.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3. 2. 28. 제5대 국회예산정책처장 국경복 임명
- 2013. 10. 19.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0주년**
2013. 12. 13.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2015. 2. 24. 제6대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임명
2015. 7. 9. 「국회예산정책처직제」 개정

3. 관계 법규 및 제·개정 현황

가. 국회법

第22條의2 (국회예산정책처) ①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나.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 2003. 7.18. 법률 제6931호
(타)일부개정 2006.10. 4. 법률 제8050호
(타)일부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직 및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위)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②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3조 (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제4조 (처장) ①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②처장은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예산정책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예산정책처 관련사무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 ①의장은 국회법 제22조의2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미리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추천위원회는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며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국회의원·국회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공무원의 임용) 예산정책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조직) ①예산정책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③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 내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내지 4급상당인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처장소속하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제공)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보고 등) ①처장 또는 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설명하여야 한다.

②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위법한 사항이나 법령·제도 또는 행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당해 업무의 소관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

부 칙 (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國會圖書館長”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 칙 (국가재정법) (제8050호, 2006.1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 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⑳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다.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 | | |
|------|-------------|------|-------|
| 제정 | 2003.10.28. | 국회규칙 | 제123호 |
| 일부개정 | 2006.12. 7. | 국회규칙 | 제139호 |
| 일부개정 | 2009. 4.27. | 국회규칙 | 제150호 |
| 일부개정 | 2010. 4.27. | 국회규칙 | 제156호 |
| 일부개정 | 2011. 8.26. | 국회규칙 | 제168호 |
| 개정 | 2013.12.13. | 국회규칙 | 제184호 |
| 개정 | 2015.7.9. | 국회규칙 | 제191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국 및 관 밑에 두는 과·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각종 업무계획의 종합·총괄조정
2.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조사 및 분석사항의 접수·분류
3. 예산의 편성 및 예산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관리
5. 예산정책처 소관 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산정책처 홍보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회계 및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
9.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 예산정책관련 자문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12. 예산정책처 소속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급·건강보험 기타 인사관리
13. 예산의 집행 및 결산
14. 물품관리·조달 및 검수
15. 예산정책처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
16. 예산정책처 소관 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 및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17. 예산정책처 소관 정보화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예산분석실)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개정 2009.4.27>

제6조(경제분석실) 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개정 2010.4.27>

② 실장은 관리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4.27, 2013.12.13>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거시경제동향의 분석·전망 및 경제예측
2. 경제정책의 연구·분석
3. 국가재정운용의 분석 및 전망
4. 통합재정수지의 분석
5. 국가채무의 분석
6. 국가세입의 추계
7.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분석
8. 국내외 재정관련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9.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신설 2010.4.27>

제7조(사업평가국) 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3.12.13>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9.4.27>

1. 국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분석
2. 국가의 주요사업의 집행에 대한 점검·평가
3. 정부의 성과관리업무에 대한 분석·평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지원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개정 2013.12.13>)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3.12.13>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결산분석·경제분석·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3>

[본조신설 2009.4.27]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7

급·8급·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13]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부칙<제123호, 2003.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國會人事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중 “國會事務處法 및國會圖書館法”을 “國會事務處法·國會圖書館法 및 국회예산정책처법”으로 한다.

제5조중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 및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을 “國會事務處法 第3條第2項,國會圖書館法 第3條第2項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6조”로 하고,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단서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48조의3제2항중 “國會圖書館長”을 “國會圖書館長·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제55조 및 제62조중 “國會事務處와國會圖書館”을 각각 “國會事務處·國會圖書館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6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7조제1항중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을 “國會事務處法 第7條第4項 및國會圖書館法 第5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契約職公務員과 국회예산정책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6인”을 “8인”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제3호 내지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채용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하는 소속기관의 장

제67조의2제1항제2호중 “法律學”을 “法律學·經濟學·財政學”으로 한다.

②國會事務總長權限의委任에관한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을 “國會圖書館長(이하 “圖書館長”이라 한다)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예산정책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중 “圖書館長”을 “圖書館長 또는 예산정책처장”으로 하고,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國家公務員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예산정책처소속 6급이하 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예산정책처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및 제4조중 “圖書館長”을 각각 “圖書館長 및 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③국회기록물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로 하고, 동조제2항중 “총무과”를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2조중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 및 국회도서관직제 제2조”를 “국회사무처직제 제2조·국회도서관직제 제2조 및 국회예산정책처직제 제2조”로 한다.

④국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를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및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로 한다.

⑤公職者倫理法의施行에관한國會規則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27조중 “國會事務總長 또는國會圖書館長”을 “國會事務總長·國會圖書館長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⑥국회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을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또는 국회예산정책처”로 한다.

제19조제1항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 및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39호,2006.1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09.4.27>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호,2010.4.27>

이 규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호,2011.8.26>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3.12.13>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15.7.9>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15. 7. 9>

국회예산정책처공무원정원표

| | |
|-------------------------|-----|
| 총 계 | 138 |
| 정무직 계 | 1 |
| 국회예산정책처장 | 1 |
| 일반직 계 | 137 |
| 관리관 · 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 2 |
| 이사관 · 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 4 |
| 3급 · 4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 11 |
| 4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 9 |
| 4급 · 5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 29 |
| 5급 · 연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 | 48 |
| 5급 또는 별정직(5급상당) | 1 |
| 6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 25 |
| 7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 6 |
| 7급 또는 별정직(7급상당) | 1 |
| 8급 또는 임기제공무원 | 1 |

라. 법규 제·개정 현황

국회예산정책처는 2015년에 관련 규칙·내규·지침 등 모두 11건의 법규를 제·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국회예산정책처조직관리위원회내규」등 내규 제·개정 10건, 「국회예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1건을 개정하였다.

[법규 제·개정 현황]

(기준: 2015. 1. 1 ~ 2015. 12. 31)

| 연번 | 법규명 | 제·개정 | 법규번호 | 시행일자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 1 |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 개정 | 내규 제69호 | 1. 7 | 조사·분석 회답 제한 사항에 국가안전보장,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을 포함하고, 요구일로부터 회답일까지 5일의 최소 경과 기한을 설정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조사·분석 회답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 2 | 국회기록물관리 내규 | 개정 | 공동내규 제70호 | 4. 1 |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도서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포함된 기록물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간행물뿐만 아니라 해당 간행물 발간과 관련된 단위업무·기록물철·문서번호를 함께 관리하기 위하여 간행물의 발간등록번호 부여 신청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 3 | 국회예산정책처 조직관리위원회 내규 | 제정 | 내규 제71호 | 4. 9 | 국회예산정책처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4 | 위원회 관심사업의 조사 및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 개정 | 내규 제72호 | 5. 1 | 동 사업의 내용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위원회 관심사업”을 “위원회 중점사업”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 연번 | 법규명 | 제·개정 | 법규번호 | 시행일자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 5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 개정 | 국회규정 제771호 | 5. 22 | 비용추계서의 작성절차를 현행 원인 분석 후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에서 비용추계결과 중심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비용추계서가 해당 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의안비용추계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이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6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시행규칙 | 개정 | 내규 제74호 | 7. 28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개정(2015.7.9.)으로 비용추계인력 13인(분석관 11인, 과장 2인)이 증원됨에 따라 법안비용추계3과 및 세수추계2과를 신설하고, 그 밖에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7 |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 개정 | 국회규칙 제191호 | 7. 9 | 개정안은 증가한 의안 비용추계 업무, 신설된 조세특례평가 업무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업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장급 관리자 3인과 담당분석관 13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을 증원하고 있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조세특례평가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조세특례평가 업무 담당인원 3명을 제외하고, 의안비용추계 업무 증가와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 업무 신설에 대응하기 위한 과장급관리자 2명과 담당분석관 11명을 포함하여 총 13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수정함. |

| 연번 | 법규명 | 제·개정 | 법규번호 | 시행일자 | 제·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
| 8 | 국회에산정책처 공무원의 비위사건 처리내규 | 개정 | 내규 제75호 | 10. 5 | 「징계·소청 및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 의 징계양정기준 및 음주운전 징계기 준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 비위사건 및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을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 |
| 9 | 의안비용추계 및 조사·분석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 개정 | 내규 제76호 | 10. 5 | 조사·분석 회답 제한 사항에 국가안 전보장,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 을 현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 항 및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을 포함하고, 요구일로부 터 회답일까지 5일의 최소 경과 기 한을 설정하여, 국익에 도움이 되고 내실 있는 조사·분석 회답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 10 | 의안비용추계 요구사항의 업무처리에 관한 내규 | 제정 | 내규 제77호 | 10. 5 | 이 내규는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 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이하 “의안비용추계”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11 | 국회에산정책처 기간제근로자 운용지침 | 개정 | 지침 제99호 | 3. 27 |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간제근로 자 채용을 위하여 기존의 서류전형 및 면접 외에,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함 |

4. 언론보도 현황 및 보도자료 배포 통계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인사·토론회 등 소식 및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배포한 보도자료 건수는 7건이며, 발간 분석보고서 및 주요 행사 관련 언론보도 건수는 총 4,594건에 달했다.

(2015. 12. 31. 기준)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
| 보도자료 배포(건) | 12 | 13 | 11 | 45 | 96 | 82 | 78 | 100 | 80 | 11 | 7 | 535 |
| 언론보도 (건) | 463 | 451 | 381 | 652 | 1,363 | 1,233 | 1,202 | 2,415 | 3,764 | 3,708 | 4,594 | 20,226 |

5. 발간물 총 목록

가. 정기보고서

(2015. 12. 30. 기준)

| 실·국 | 과 | 연번 | 제 목 | 발간일 |
|------------|----------|----|--|--------|
| 예 산 분석실 | 실 공동 | 1 | 2015 대한민국 재정 | 2. 23 |
| | 실 공동 | 2 | 2015 경제·재정 수첩 | 4. 4 |
| | 실 공동 | 3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4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5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정무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6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7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8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9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10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11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기획재정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12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13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 6. 18 |
| | 실 공동 | 14 | 2014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6. 18 |
| | 법안비용추계2과 | 15 | 2015 재정법령집 | 6. 18 |
| | 실 공동 | 16 | 2013회계연도 결산 국회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Ⅱ | 6. 24 |
| | 실 공동 | 17 | 2014회계연도 결산 거시·총량 분석Ⅲ | 7. 6 |
| | 실 공동 | 18 | 2014회계연도 결산 성인지 결산서 분석Ⅳ | 7. 6 |
| | 실 공동 | 19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 7. 10 |
| | 실 공동 | 20 | 2014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 8. 10 |
| | 실 공동 | 21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정무위원회] | 10. 19 |

| 실·국 | 과 | 연번 | 제 목 | 발간일 |
|--------------|---------|----|--------------------------------------|--------|
| | 실 공동 | 22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3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4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5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기획재정부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6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7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8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안전행정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29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30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31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국토교통위원회] | 10. 19 |
| | 실 공동 | 32 |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10. 19 |
| | 경제예산분석과 | 33 | [예산안분석시리즈 II] 2016년도 예산안 거시·총량 분석 | 11. 2 |
| | 사회예산분석과 | 34 | [예산안분석시리즈 III] 2016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 | 11. 2 |
| | 경제예산분석과 | 35 |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16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 11. 2 |
| 경 제 분 석 실 | 경제정책분석과 | 36 |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3호) | 2. 28 |
| | 경제정책분석과 | 37 |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4호) | 4. 27 |
| | 거시경제분석과 | 38 | 2015 수정 경제전망 | 5. 15 |
| | 세수추계과 | 39 | 2014회계연도 총수입결산분석 | 6. 12 |
| | 실 공동 | 40 |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5호) | 6. 29 |
| | 세제분석과 | 41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조세개요 I | 7. 6 |
| | 세제분석과 | 42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소득세 II | 7. 6 |
| | 세제분석과 | 43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법인세 III | 7. 6 |
| | 세제분석과 | 44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부가가치세 IV | 7. 6 |
| | 세제분석과 | 45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국제조세 V | 7. 6 |
| | 세제분석과 | 46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조세지출 VI | 7. 6 |
| | 세제분석과 | 47 | 2015 조세의 이해와 쟁점-통계편 VII | 7. 6 |
| | 실 공동 | 48 |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36호) | 8. 27 |
| | 거시경제분석과 | 49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I] 2016년 및 중기 경제전망 | 9. 21 |

| 실·국 | 과 | 연번 | 제 목 | 발간일 |
|------------|---------|----|--|--------|
| | 세수추계1과 | 50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Ⅲ]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 10. 12 |
| | 세제분석과 | 51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Ⅱ] 2015년 세법개정안 분석 | 10. 15 |
| | 재정정책분석과 | 52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Ⅳ]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 10. 26 |
| | 세제분석과 | 53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Ⅴ]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 10. 30 |
| | 경제정책분석과 | 54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7호) | 10. 30 |
| | 세수추계1과 | 55 |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Ⅵ] 2015년 조세특례 집중평가 분석 | 11. 2 |
| | 경제정책분석과 | 56 |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과 시사점 | 12. 7 |
| | 경제정책분석과 | 57 | NABO 경제동향 & 이슈 (제38호) | 12. 30 |
| 사 업 평가국 | 공공기관평가과 | 58 | [사업평가 15-01]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 2. 12 |
| | 경제사업평가과 | 59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사회·행정] | 6. 10 |
| | 경제사업평가과 | 60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경제·산업] | 6. 10 |
| | 경제사업평가과 | 61 |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총괄·다부처] | 6. 10 |
| | 공공기관평가과 | 62 | 2014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 | 6. 17 |
| | 경제사업평가과 | 63 | [사업평가 15-02]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 9. 1 |
| | 사회사업평가과 | 64 | [사업평가 15-03] 생태하천 사업 평가 | 9. 4 |
| | 행정사업평가과 | 65 | [사업평가 15-04] 노인장기요양 사업 평가 | 9. 11 |
| | 경제사업평가과 | 66 | [사업평가 15-05] 기금 여유자금 운용실태 평가 | 9. 17 |
| | 경제사업평가과 | 67 | [사업평가 15-06] 주거안정 사업 평가 | 9. 18 |
| | 경제사업평가과 | 68 | 2016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 10. 7 |
| | 공공기관평가과 | 69 | 2015~201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평가 | 10. 14 |
| | 사회사업평가과 | 70 | [사업평가 15-07]취업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평가 | 10. 21 |
| | 산업사업평가과 | 71 | [사업평가 15-08]농업보조사업 평가 | 10. 21 |
| | 사회사업평가과 | 72 | [사업평가 15-09]장애인복지사업 평가 | 10. 22 |
| | 산업사업평가과 | 73 | [사업평가 15-10] 국가R&D 정책 평가 | 10. 27 |
| | 경제사업평가과 | 74 | [사업평가15-11] 자영업자 지원 사업 평가 | 10. 30 |
| | 공공기관평가과 | 75 | [사업평가 15-12] 공공기관 고용관리 정책 평가 | 12. 18 |

나. 정책·현안 보고서

| 실·국 | 과 | 연번 | 제 목 | 발간일 |
|------------|---------|----|--|--------|
| 경 제 분석실 | 세제분석과 | 76 | [경제현안분석 제87호]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2. 16 |
| | 세제분석과 | 77 | [경제현안분석 제88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세제개편 동향 연구 | 2. 16 |
| | 세제분석과 | 78 | [경제현안분석 제89호] 조세지출제도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9. 24 |
| 사 업 평가국 | 산업사업평가과 | 79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6호]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사전평가 | 2. 9 |
| | 산업사업평가과 | 80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7호] 항만 적정하역능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12. 24 |

다. 특별·연구 보고서

| 실·국 | 과 | 연번 | 제 목 | 발간일 |
|------------|---------|----|---|-------|
| 사 업 평가국 | 사회사업평가과 | 81 | 정부책임처(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 1. 21 |
| | 행정사업평가과 | 82 | 복지사업과 지방재정 정책 토론회 결과보고서 | 12. 2 |

라. 정기간행물

| 실·국 | 과 | 연번 | 제 목 | 발간일 |
|------------|---------|----|--------------------------|--------|
| 기 획 관리관 | 기획협력담당관 | 83 | 예산춘추 2014년 겨울호 (통권 제37호) | 1. 30 |
| | 기획협력담당관 | 84 | NABO 2014 연차보고서 | 2. 23 |
| | 기획협력담당관 | 85 | 2015년 예산춘추 봄호(통권 제38호) | 5. 27 |
| | 기획협력담당관 | 86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4권 1호 | 5. 31 |
| | 기획협력담당관 | 87 | 2015년 예산춘추 여름호(통권 제39호) | 7. 13 |
| | 기획협력담당관 | 88 | 2015년 예산춘추 가을호(통권 제40호) | 11. 4 |
| | 기획협력담당관 | 89 | 학술지 예산정책연구 제4권 2호 | 11. 30 |

□ 기획·조정

박장호 기획관리관
윤동준 기획협력담당관

□ 자료 수집

양창석 기획협력 1담당
이상오 기획협력 2담당
고준혁 기획·감사 담당
지수현 의원요구자료·법무 담당
양승민 예산·서무 담당
오지은 교육·대의협력 담당
최병청 정보화 1담당
정명호 정보화 2담당
정상식 홍보·편집 1담당

□ 편집

정상식 장유진

NABO 2015 연차보고서

발 간 일 2016년 3월 4일
발 행 인 김준기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인 박장호 기획관리관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유월애 (TEL 02·859·2278)

ISBN 978-89-6073-880-5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6

나라살림 지킴이
나라정책 길잡이

Annual Report of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